

세계 각국의 사회협약

책머리에 부쳐

우리나라는 1993~94년 한국노총과 경총 사이의 임금인상에 관한 중앙합의, 그리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의 사회협약 등 사회적 협약을 추진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금년에 들어와 청년실업의 증가, 제조업 공동화와 투자부진의 우려 속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타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협약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따라 외국에서는 사회적 협약이 어떠한지가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호주, 독일 등에서 어떤 내용의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자 한다.

1990년대에 들어와 부활에 성공한 사회적 협의주의는 이전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과거에는 사회적 협의나 사회협약이 주로 서유럽 복지국가 모델에서 임금인상-물가인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임금인상 완화와 노사정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개방된 공급 중심의 경제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연성 제고, 구조조정,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시도는 시간제 및 임시근로자의 증가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동반하며 이루어졌고, 또한 이전의 사회적 협약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참

여적 작업장 혁신에 대한 노사정의 공동 노력도 보여진다. 독일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직업훈련의 연계, 노동시간의 유연성 추구가 돋보인다. 아일랜드의 경우 사업장에서의 협력과 참여증진을 경제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주요한 방법으로 평가했던 노동운동이 이런 변화를 주도하였으며, 사용자측 역시 이를 경쟁력 강화의 주요 수단으로 여기고 협력하였다.

여기 소개된 협약체결 국가들의 경험이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정책협약이 새로운 경제환경이 제기한 도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공부문 부채와 고실업에 시달리던 아일랜드는 안정된 노사관계 속에 완전고용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였다. 네덜란드도 특유의 제도화된 노사정 협의에 힘입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진을 통해 실업률을 급격히 낮출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과거의 사회적 협약이 스웨덴 등 북유럽 중심의 중앙집중화된 교섭구조를 지닌 국가들에서 일반적이었다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협의는 중앙집권적 교섭구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일자리창출 역량이 현저히 약화되고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보다 의미 있는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타협이 그 무엇보다도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진산업국가에서 맺어진 사회협약의 주요 사례를 모아 놓은 이 책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협의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2004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 장 이 원 덕

목 차

책머리에

제 1 장 네덜란드의 협의경제

배 경	(김정환)	3
1983년 고용정책에 관한 일반 권고: 바세나르 협약		5
2003년 고용조건 협의에 관한 선언문		8
2004-2005년 고용에 관한 노동재단의 공동 선언문		10
[별첨] 네덜란드 내각의 정책선언문		12

제 2 장 아일랜드의 사회협약

배 경	(이주희)	21
1987~1990 국가재건협약(PNR: 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		25
I. 유럽공동체 차원의 정책		27
II. 거시경제정책		30
III. 세제 개혁		33

IV. 사회적 형평성 확대	36
V. 고용	41
VI. 노동법	60
VII. 조사·감독 위원회	62
[부록] 정부출연기관들의 제안	64

제 3 장 핀란드의 사회협약

배 경	(조성재) 73
2003 - 2004 소득정책 협약	77
I. 목 적	78
II. 민간 및 공공부문 단체협약에 대한 결정	78
III. 지속적인 협상	87
IV. 노동생활의 발전	88
V. 지식과 역량의 유지 및 개발	89
V. 고용정책	89
VII. 범위, 효력, 효력 개시일	89

제 4 장 호주의 사회협약

배 경	(이장원) 93
1983년 경제정책 관련 노정협약 합의문: 호주노동당 (ALP), 호주노동조합협의회(ACTU)	97
I. 도입	97
II. 소득 및 물가정책의 특징	103
III. 소득 및 물가정책 구성요소	105
IV. 구체적 정책 합의사항	106

V. 임금 및 근로조건	107
VI. 비임금소득	108
VII. 과세 및 정부지출	110
VIII. 지원정책	112
IX. 노사관계	113
X. 산업발전	115
XI. 이 민	121
XII. 사회보장	122
XIII. 산업보건 및 안전	124
XIV. 교 육	126
XV. 보 건	128
XVI. 호주 정부의 고용	131
XVII. 이행기제	132
XVIII. 결 론	133

제 5 장 독일의 사회협약

배 경	(배규식) ··· 137
1998년 12월 7일자 고위급 회담 결과 「일자리, 직업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에 관한 공동 성명서	141
1999년 2월 25일, 일자리연대 제2차 고위급 회담	145
1999년 7월 6일, 일자리연대 제3차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서	146
I.	146
II. 미래 프로그램 2000	147
III. 기업체제의 개혁	147

IV. 충분한 직업훈련 실습자리 확보	148
V. 단체협약정책	150
VII. 고령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제	150
VII. 연금/조기퇴직	151
VIII. 동독 지역 재건	152
IX. 벤치마킹	153
X. 차기 고위급 회담	154
1999년 7월 6일, 직업훈련 합의서	155
1999년 12월 12일, 일자리연대 제4차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서	161
I. 일자리연대의 향후 중점 분야	161
II. 직업훈련 합의의 전망	162
III. 저숙련 노동자 및 장기 실업자의 고용기회 촉진	164
IV. 고용을 촉진하는 임금정책	164
V. 기업세계 개혁 현황	165
VI. 일자리연대 - 실무그룹	165
2000년 1월 9일, 일자리연대 제5차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서	166
2000년 7월 10일, 일자리연대 제6차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서	169
I. 경제 상황	169
II. 직업훈련 합의의 전망	170
III. 청소년과 고용 문제 - 지역적 이동성 촉진	173
IV. 노동시간정책 및 보다 장기적인 노동시간계좌 활용 ..	175
V. 숙련 향상	176

VI. 직무순환(Job rotation)	177
VII. 저숙련 노동자 및 장기 실업자의 고용기회 촉진	179
VIII. 차기 고위급 회담	179
2002년 1월 25일, 일자리연대 고위급 회담 관련 슈뢰더	
연방총리의 기자회견 내용	180
2001년 3월 4일, 일자리연대 제7차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서	187
I. 경제 상황	188
II. 숙련향상	190
III. 고령노동자들의 고용 전망 향상	193
IV. 일자리 중개 강화	195
V. 노후대책 및 재산형성	196
VI. 혁신을 통한 일자리	197
VII. 유럽연합의 동유럽 확대	198
VIII. 차기 고위급 회담	199

제1장

네덜란드의 협의경제

◆ 배경

네덜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 두 차례에 걸친 석유위기, 국제적인 경기침체, 사회보장비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적자 등으로 이른바 ‘네덜란드 병’을 앓아 유럽의 환자로 전락하였다.

네덜란드 병을 치유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경제체제’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 온 네덜란드의 노사는 1982년 11월 이른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바세나르 협약은 비록 간단한 문건이지만, 사회적 파트너인 노사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금인상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네덜란드의 협의경제체제는 협의를 실현하는 조직인 노동재단(1945년 5월 17일 결성)과 사회경제협의회(1950년 결성)가 주도한다. 노동재단은 민법에 근거하여 결성된 반면, 사회경제협의회는 산업조직법이라는 공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동재단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2원적 구성인 반면, 사회경제협의회는 정부가 참여하는 3원적 구성이다. 또한 노동재단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협의하고 교섭하는 기구인 반면, 사회경제협의회는 정부와 의회에 자문하는 기구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의 사회협약은 노동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노사

양 당사자간에 체결되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공식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1982년 바세나르 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네덜란드의 노사관계는 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적인 노사관계에서 노사 자치주의에 입각한 분권화된 노사관계로 전환하게 된다. 협약 체결 이후 네덜란드 경제는 경제력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네덜란드 경제는 고율의 임금인상, 사회보장비, 특히 장애급여의 남용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세계적인 불경기로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정부의 개입을 우려한 노사 양 당사자는 다시 1993년 참여와 분권화의 정신을 재확인한 ‘새로운 길(A New Course)’이라는 제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 11월 28일에는 ‘2003년의 고용조건에 관한 선언’, 2003년 10월 17일에는 ‘2004-2005년 고용에 관한 노동재단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노사협의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2003년 협약과 2004-2005 협약은 모두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임금 자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2003년 협약은 처음으로 임금인상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협약과 비교된다. 2004-2005 협약은 사회보장비에 대한 정부의 조치 여부에 따라 이행이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노사 양 당사자간 협약이지만, 실제로는 노사정 3자 협약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김정한 연구위원)

1983년 고용정책에 관한 일반 권고: 바세나르 협약

1982년 11월 24일 헤이그

노동재단(Labour Foundation)의 노사 대표들은

- 경제성장, 물가안정, 기업경쟁력 개선 및 이와 연관된 수익 개선 등의 요인들이 고용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사회 및 경제정책이 모든 수준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모든 경제활동 인구, 단기적으로는 유급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 위에 언급된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의 일자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 단축, 파트타임, 청년실업 해소 노력 등 다양한 일자리 배분방법을 포괄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고용형태, 단계적 이행, 고용효과에 대해 단체교섭 파트너간의 합의된 사항들과 관련하여, 전제조건들 중의 하나는 기

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현재의 일자리 배분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며,

- 전술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1983년에 착수해야 한다는 점과 단체교섭 파트너들은 단체협약에 이미 명시된 임금조항에 관하여 재협상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며,
 - 단체교섭 파트너들이 이러한 취지의 정책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가능한 한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 1983년 1월 1일 이전까지 일자리 배분과 청년실업 감소 등 제반사항에 관한 일련의 권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재단에 참가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의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며,
 - 신내각의 정책에 대한 노사 양 당사자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으로 1983년 단체교섭이 전술한 권고사항과 정책 취지에 입각하여 기업 및 산업부문별로 조만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표명하며, 정부는 단체교섭 파트너들이 전술한 권고안을 토대로 서로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단체교섭 파트너들은 최근의 발전 상황과 1983년 봄의 단체교섭 결과에 대해 내각에 알려 줄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다.

노동재단의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의장

네덜란드 경제인연합회
C. van Veen

네덜란드 노총
W. Kok

네덜란드 기독교 경영자협회
S.J. Van Eijkelenburg

네덜란드 기독교노총
H. van der Meulen

왕립 네덜란드 경제인연합회
W. Perquin

중간·고위관리자노총
H. van der Schalie

네덜란드 기독교 경제인연합회
S. Veninga

네덜란드 천주교 농부 및 시장 원예가 협회
왕립 네덜란드 농업협동조합

네덜란드 기독교 농부 및 시장 원예가 협회
대표 J.J. Shouten

2003년 고용조건 협의에 관한 선언문

노동재단의 노사단체는,

1. 국내외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결과 연금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경제성장률 둔화와 기업의 수익 하락, 고용 감소 및 실업률 상승 등 부정적인 결과들을 목격하고 있으며,
2.
 - ①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 강화가 경제성장 및 고용회복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 ② 경기 회복은 지난 몇 년간의 임금인상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며,
 - ③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는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 또한 중요한 요소이며,
 - ④ 사회적 파트너들이 체결하는 고용조건에 관한 협약이 경제 회복에 극히 중요하며,
 - ⑤ 이런 상황에서 새롭고 감내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전술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섭당사자들이 단체교섭시에

2003년 예상 물가상승률인 2.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임금을 인상하는 데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임금인상 이외에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급 도입에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수익성과 고용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산업과 기업은 임금인상률을 낮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이에 덧붙여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인상 원칙(노동재단, '2000-2001 고용조건 협의에 관한 선언문' 1999년 10월 26일, 출판번호 6/99)에 따라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2004~2005년 고용에 관한 노동재단의 공동 선언문

네덜란드 노동재단의 노사대표들은,

- 네덜란드가 지속적으로 경제 불황을 겪고 있으며, 이는 네덜란드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실업률의 급증, 혁신 및 생산성의 하락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 경제성장과 고용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생산성 향상과 혁신, 그리고 근로자 참여를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 2003년 10월 17일에 발표된 내각의 정책선언문(별첨 1 참조)을 고려하여
 - 2004년 단체교섭에서 협약임금을 올리지 않을 것과, 2005년에는 사실상의 임금 동결에 합의할 것을 모든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다만, 일회성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합의할 여지는 있다.¹⁾ 성과급은 정률이나 정액 또는 양자를 혼합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1) 이 선언문에서는 의료비 기여분에 관한 합의는 협약임금조항에서 제외한다.

- 전술한 2005년의 협약임금 동결에 대한 권고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각과 사회적 파트너는 조기퇴직/조기연금(pre-pension)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직업경력에 대한 제도에 대해 (늦어도) 2004년 4월 이전까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할 경우 여타 과도기적 조치들과 함께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에 대해 합의한다.
- 단체교섭으로 정해지지 않는 임금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방식을 활용할 것을 추가적으로 권고한다.
- 2003년 10월 17일자의 장애보험법(Disablement Insurance Act)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는 내각의 정책선언문을 고려하여 2002년 3월 22일 네덜란드 노동재단이 발표한 선언문의 관련사항과 함께 전술한 1~4항을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별첨 2 참조).

2003년 10월 17일 헤이그

네덜란드 경제인연합회(VNO-NCW)
J.H. Schraven

네덜란드 중소기업협회
L.M.L.H.A. Hermans

네덜란드 농업원예협동조합
G.J. Doornbos

네덜란드노총(FNV)
L.J. de Waal

네덜란드 기독교노총(CNV)
D. Terpstra

중간·고위관리자노총
A.H. Verhoeven

[별첨]

네덜란드 내각의 정책선언문

2003년 10월 14일

1.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내각은 다년간의 임금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고용주 및 노동단체들의 책임이다. 내각은 또한 임금 동향에 관한 2003년 10월 14일자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Dutch Social Economic Council)의 선언문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2. 일련의 중요한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내각은 고용주들과 근로자들이 원하는 몇몇 분야에서의 내각의 기존정책 변화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들과 타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양해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3. 조기퇴직/조기연금/일과 삶의 균형
조기퇴직/조기연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방안 도입 등 2004년 조세정책에 포함된 내용은 유지될 것이다. 내각과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는 조기퇴직/조기연금/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완벽한 재정적 지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를 할 것이며, 2004년 4월
 까지 합의에 도달하여 동 시스템이 2006년 1월 1일에 다른
 여타 과도기적 계획들과 함께 도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내각은 2006년 5억 1천만 유로, 2007년
 4억 1천만 유로,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2006년 1월 1일
 도입하는 데 필요한 2억 5천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 예산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시설 및 기존 휴가저
 축제도를 위한 재원이 포함된다. 내각은 사회 파트너들이
 이 예산안을 순순히 승인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
 다.

가용기금

(단위: 백만 유로)

	2006	2007	구조적 기금
보증금	510	410	250
직장 이력	200	200	200
휴가 저축	160	150	150
전 체	870	760	600

최종 수정안은 2005년에 채택될 것이며, 조세계획은 2004년에
 결정된다.

4. 임금과 부가급여와의 연계

- a. 2006년 1월 1일부터 임금과 부가급여 간의 연계성이 완전
 히 회복될 것이다. WKA 급부 편차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에 근거하여 동 급부는 2004년과 2005년에 동결될 것이다.
- b. 2004년과 2005년에 내각은 공공부문의 임금 동결을 협약임

금 인상을 위한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2006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에서 타협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통상적인 준거모델을 사용할 것이다.

5. 실업급여

- a. 고용주가 해고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수당을 실업급여에서 감액하는 ‘반누적 실업급여’는 폐지된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고용주(개별적이던 단체이든 간에)가 제공하는 해고수당을 보완하는 것이 계속 가능하게 될 것이다.
- b. 내각은 사회경제협의회에게 2004년 3월 1일 이전에 내각에게 중요한 사항인 실업급여에 관해 자문할 기회를 주기 이전에는 신원증명이나 일시적 실업급여에 관한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하지 않을 것이다.

6. 장애보험

- a. 내각의 계획과는 달리 임금과 관련된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일을 하지 않는 부분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사자의 동거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자격이 계속 부여된다. 장애급여는 장애등급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70% 정도이다.
- b.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이 실현될 것이다.
 - ① 영구적이며 장기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계획으로 편입할 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12개월 기준으로²⁾ 대상자는 현재 추계치인 2만 5천명으로 제한될 것이며, 2007년 7월 수치를 토대로 2007년 8월에 결정될

것이다.

- ②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는 장애 2년차 기간에 지급되는 70%의 임금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의도이지만, 이 사항은 실제로는 단체교섭 당사자들이 하여야 할 사항이다.
- c. 2006년 1월 1일 발효될 새로운 시스템에서 영구적이며 장기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은 법정수당을 기초로 계산할 경우 5%포인트 증가하여 소급 적용될 것이다.
- d. 또한 Pemba가 2006년 1월 1일에 효력이 소멸될 것이다.
- e. 내각은 장애 2년차에 지급받는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70%를 넘지 않도록 어떠한 법률도 입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각은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가 이 점에 대해 표명한 취지에 따라 임금액이 7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f. 부분적 장애자의 근로재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급부는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 모두가 부담할 것이다.
- g. 내각은 장애 기준, 직종별 위험도를 고려한 추가적 보장계획, 유연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그리고 군인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SER에게 추가적인 자문을 요청할 것이며, 2004년 1월에 발표될 것이다. SER의 장애 기준이 적용될 경우 신규 시스템으로의 유입이 2만 5천명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조적으로 내각은 이러한 장애 기준을 승인할 것이다.

2) 유입 수치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수당은 실행에 옮기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될 것이다.

7. 청년실업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학습)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용주 단체들은 청년들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CWI(일자리와 소득을 위한 센터, Center for Work and Income)가 모든 부문을 지원할 수 있을지를 조사 중에 있다. CWI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단기간의 활동을 위한 예산(1명당 평균 1천 유로 상당)을 확보하고 있다. 내각은 수습직의 경우 급부의 손실없이 일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급부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만 국한된다. 일이 일시적이고 학교 수업에 의해 제한을 받거나 임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내각은 노동재단과 이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8. 보조금 혜택을 받는 일에 대한 제한

내각은 강제해고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협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VNG(네덜란드 지자체협의회: Association of Netherlands Municipalities)와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긴급 논의를 요청할 것이다.

9. 일과 사회보장

내각에 제출한 바와 같이 일과 사회보장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내각과 사회파트너들은 사회보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과 장애인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더 특별한 관심을 갖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10. 의료비

2004년 기준으로 국가의료기여금을 제한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2억 유로 상당의 일회성 국가보조금이 네덜란드 국가보건청 (Dutch National Health Service)에 제공될 것이다.

제2장

아일랜드의 사회협약

◆ 배경

아일랜드는 1921년 영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는 독립하였으나, 영국 통치의 영향력은 그 이후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특히 아일랜드에서는 영국식의 대립적 노사관계가 지배적이어서 노사 모두 법적 규제나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기업 차원에서의 분권화된 교섭을 원하였는데, 이러한 현실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사정의 합의 도출과 협약정치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극심하였던 경제위기의 경험을 통해 아일랜드는 사회협약의 전통을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사회적 협약이 맺어진 1987년 실업률은 16.8%, 공공부채는 GDP의 118.2%에 이르렀고, 고용 기회가 격감함에 따라 이민을 통한 노동력 이탈도 최고조에 달하였다. 또한 유럽통화연합에의 가입을 위해 그에 합당한 재정 및 경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압력 역시 받고 있었다. 아일랜드는 고실업과 재정적자, 경제부진을 Fianna Fail 정부의 사회적 파트너십 전략으로 극복하려 노력하였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그리고 정부의 총체적인 노력 끝에 그 첫 번째 결실이 여기 소개된 1987년 아일랜드 국가재건협약(PNR: 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의 타결로 나타났다.

국가경제사회협의회(NESC: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가 마련한 국가발전전략(Stratgy for Development)이 아일랜드 사회의 경제 회복에 필요한 기본 전략을 제공

해 주었다. NESC는 이후 협약에서도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검토하고 협의 과정에 토론의 초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아일랜드에서 사회협약이 지속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은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안정을 위한 전략과 목표뿐 아니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기제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이를 위해 정부와 노사 대표가 모두 참가하는 중앙심의위원회(Central Review Committee)가 PNR 안에 만들어졌고, 또한 다수의 실무위원회와 노사정의 비공식적인 접촉이 이 기능을 보완하였다.

PNR에서 발전한 협의의 유형은 현재까지 체결된 총 5개의 협약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경제사회발전계획(PESP: Programme for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1990~1993); 작업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협약(PCW: Programme for Competitiveness and Work, 1994~1996); 파트너십 2000(Partnership 2000, 1997~2000); 공평한 번영을 위한 협약(PPF: Programme for Prosperity and Fairness, 2000~2003); 지속적인 전진(Sustaining Progress, 2003~2005).

PNR을 포함한 처음 세 가지 협약은 중앙집중화된 임금 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전형적인 신조합주의식 타협의 형태를 띠었는데, PCW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 실업자, 종교 등과 관련된 시민 단체도 가입하여 사회적 배제와 평등, 교통과 연금 문제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사회통합 능력을 제고하였다. 특히 파

트너십 2000에서는 기업 차원에서의 노사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아일랜드에서의 연속적인 사회협약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1990년대 이후 아일랜드의 경제사회적 성공의 주요 견인차였다고 평가된다.

(이주희 연구위원)

1987~1990 국가재건협약

(PNR: 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

◆ 개요

1. 정부, ICTU,¹⁾ FUE,²⁾ CII,³⁾ CIF,⁴⁾ IFA,⁵⁾ Macrana Feirme⁶⁾와 ICOS⁷⁾는 국내 경제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상태를 인식하여,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경제를 회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본 아일랜드 국가재건계획의 추진에 합의하였다. 국가경제사회협의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가 실시한 국가발전전략 1985-1990 보고서는 본 계획의 근간이 되는 근본적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다.

1) 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 아일랜드 노동조합총연맹

2) Federated Union of Employers: 아일랜드사용자단체, 후에 Confederation of Irish Industry와 합병

3) Confederation of Irish Industry: 아일랜드 산업연맹

4) Construction Industry Federation: 아일랜드 건설산업연맹

5) Irish Farmers Association: 아일랜드 농업연맹

6) Macra na Feirme: 젊은 농부들에게 훈련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7) Irish Co-operative Organization Society LTD: 아일랜드 협동조합 조직

2. 본 계획은 1990년 말까지 시행될 것이며, 다음 4개 부문에
서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 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재정, 환율 및 통화 환경 구축
 - ② 조세 체계에 있어서의 형평성 및 공평성 증진
 - ③ 사회적 불평등의 감소 및 척결
 - ④ 산업별 고용창출 기회 증대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 모색
노력 심화

3. 본 계획은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아일랜드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방해가 되는 방해요소
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
다.

4. 다음 사항들은 현재 아일랜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①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EC(European Community, 유
럽공동체) 평균의 64%밖에 되지 않는다.
 - ② 아일랜드 GNP의 150% 이상에 해당하는 250억 파운드
이상의 국가 채무와 이자는 국가 세입의 3분의 1에 해당
한다.
 - ③ 재무부는 경상 및 자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1987년
GNP의 10.7%를 차관 비율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공동체 내에서 가장 높은 예산적자에 해당한다.
 - ④ 높은 명목 및 실질 이자율은 투자 유치에 방해요소로 작
용하고 있다.
 - ⑤ 실업률은 18.5%로서 24만 2천 명에 이르는 노동력이 일자

리가 없는 상태이며, 이 중 7만 3천 명이 25세 미만으로 유럽공동체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 ⑥ 농업부문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유럽 공동체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한다.
- ⑦ 순수 해외이민이 현재 3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율에 상응하는 수치이다.
- ⑧ 지난 5년 동안 설비투자에 있어서 유럽공동체는 20%의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일랜드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지 못했다.

5. 아일랜드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잠재력을 실현하는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및 자연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점과 과학기술 응용력을 최대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I. 유럽공동체 차원의 정책

- 1. 본 계획은 아일랜드가 세계경제 및 유럽공동체(EC)에 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 2. 아일랜드의 유럽공동체에 가입함으로써 대단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유럽공동체의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농업부문의 잉여농산물 증가가 공동농업정책

에 부담을 주고 있음에 따라 아일랜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아일랜드는 유럽공동체 내에서의 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일관적으로 지지해 왔다. 이 사실은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에 아일랜드가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후에 단일유럽특별법(Single European Act)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국가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의 개최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냈다는 것이 잘 입증하는 바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유럽공동시장(Common Market) 구축을 마무리짓기 위한 단일유럽특별법의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 내에서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내놓은 <들로르 계획(Delors Plan)>이라고 명명된 제안들을 환영하는 바이다. 아일랜드는 유럽공동시장의 완성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할 것이며, 관련 제안들 중 일부를 신중하지 못하게 적용함으로써 인해서 아일랜드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경우, 그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는 유럽공동체의 경제적·사회적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안의 이행을 위해 시장개방정책을 취할 것이다.
4. 유럽공동체의 정책들 중 아일랜드에게 최대의 관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

- ① 유럽공동체를 위한 충분한 국내 자원을 공급한다. 1988년 1월 1일부로 개선된 자금조달 시스템에 따라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회비가 각국의 상대적 발전 정도에 비례하게 된다. 아일랜드는 1992년의 국내 자원의 한도를 국내총생산(GNP)의 1.4%로 규정하였으며, 국내총생산의 확대와 관련된 '제4의 자원' 창출을 위한 유럽공동체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 ②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에 있어서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럽공동체 차원의 조치가 구조기금(Structural Funds)과 유럽공동체의 정책 수행을 통해 좀더 효과적으로 취해지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구조기금을 1992년까지 실질적으로 두 배로 확대하고, 중재율(intervention rates)이 지역별 문제점들의 상대적 심각성과 각 회원국별 자금조달능력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정책을 지지하는 바이다. 아일랜드는 낙후지역에 기금을 더욱 집중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는 바이며, 동 원칙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 ③ 예산규제체제의 구체적인 특징들이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효과적인 운용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며, 고유 자원의 활용 확대와 경제 및 사회적 결속력 강화를 위한 구조기금의 활용 증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
- ④ 공동농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어, 가족경영 농가 및 소규모 농가에게 공정한 생활수준을 제공하고, 본 정책

의 유럽공동체적 성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유럽공동체 내의 자본 흐름의 자유화 노력이 아일랜드 경제의 개발 필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⑥ 간접 조세의 도입을 위한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들이 공공부문 재정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 결과 정부 세수를 유지하고 세제개혁을 도모한다는 아일랜드의 전반적인 필요를 반영하게 해야 한다.
- ⑦ 공동시장 구축을 도모함으로써 소규모 회원국들에게 시장 기회의 창출을 촉진하며, 투자전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동시에 지역간 격차 축소를 위한 효과적인 유럽공동체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⑧ 과학기술 및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교류와 금융공학 및 환경보호 분야 등에 관한 유럽집행위원회 정책들이 아일랜드의 경제발전 계획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 ⑨ 유럽공동체 내의 경제정책 조율이 유럽공동체 전체의 경제성장률 확대에 기여하여, 현재의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실업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II. 거시경제정책

1.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국가채무와 그로 인한 이자가 아일랜드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변할 것이다. GN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 계획을 시행하는 동안 안정화될 것이다.

2. 경제성장 및 이자율의 개선에 따라, 재무부 기준 차관비율 요건을 GNP의 5~7%로 낮추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계속해서 공적자금 지출을 통제하고 축소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다. 본 계획 또한 경제활동을 증진시키고 이자율을 낮추며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재무부 기준 차관비율 축소에 기여할 것이다.
3. 공적자금 지출의 통제방안의 하나로서 좀더 효율적인 국채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취해 온 정책들이 추진될 것이다.
4. 재무부 차관비율의 축소(Reduced Exchequer borrowing)는 이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신규 투자 및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은 이 계획의 추진 기간 동안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본 계획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6. 환율은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와 연동될 것이며, 이로써 EMS의 평균치와 아일랜드의 이자율 간의 연관성을 증대시켜 주고, 투자자 신뢰도를 증진시키며, 투기성 자본의 흐름을 억제해 준다.

7. 통화정책은 국제적 발전상황 및 환율정책에 맞추어 최저 이자율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8. 적절한 임금수준은 계획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낮은 소득세와 낮은 인플레이션은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본 계획하에서 세계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제Ⅲ장에 명시된 소득세 감축을 실현하고자 한다.
9. 이러한 배경에서 임금인상은 1988년, 1989년, 1990년 각각 2.5%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현한다는 것이 동의되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정부, FUE, CIF, ICTU는 국가적 차원에서 근로시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총체적 틀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저임금 노동자들과 근로시간에 관한 의견과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임금인상의 성격과 그 폭은 별도로 좀더 광범위한 공공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임금협약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ICTU, FUE와 CIF 사이의 협약을 위한 제안서’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11. 정부는 목표한 예산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 부문 근로자들을 감원하고자 하고, 특히 이러한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포괄적이며 자발적인 조치들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인력감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자발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정부의 예산 및 구조상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를 재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는 ICTU와 전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러한 사전의 협의는 본 계획에 대한 검증기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III. 세제 개혁

◆ 개 괄

1. 정부는 조세제도의 개혁에 전념하고 있다. 1987년 예산안 마련 때부터 시행된 본 계획하의 혁신적 조치들은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증대하고, 조세 징수의 근본적 개선을 도모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될 것이다.

◆ 소득세

2. 정부는 소득세를 향후 3년 동안 총 2억 2천 5백만 파운드 정도 감면할 것인데, 여기에는 7천만 파운드에 상당한 PAYE (pay-as-you-earn: 원천과세 징수) 수당 확대량이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소득수준 35%대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범위 조정을 통하여 납세자들의 3분의 2를 표준

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이다.

3. 정부는 계속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출만 세금 목적으로 허용할 것이다.
4. 1987년 금융특별법(1987 Finance Act)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의해 지불된 전문직 보수에 대한 원천공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5. 농부들에게는 다른 자영업 소득세 납부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이며, 이는 전면적으로 또한 일관성 있게 시행될 것이다.

◆ 법인세

6. 1987년 추정 법인세 수입은 총 세수의 4%인 2억 6천 2백만 파운드이며, 이는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치이다. 그 주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규모와, 특히 제조업에 유리한 조건들을 포함하는 사업 유인책 때문이다. 올해 예산안에는 재무장관은 법인세법을 재검토할 것을 포함시켰고, 현재 상당한 진전을 이룬 상태에 있다.

◆ 자본세제

7. 자본세제는 재검토될 것이며, 자본세 수익률을 훨씬 증가시

킬 수 있는 가능성이 1988년과 그 후 예산에서 검토될 것이다.

8. 모든 재원으로부터의 이득을 총 합산함으로써 자본취득세(Capital Acquisitions Tax) 수익률을 증가할 것이다.

◆ 세금회피, 세금징수 및 집행

9. 정부는 세금징수와 집행제도의 개선하고자 한다. 연체금을 해결하고 세금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데, 정부는 이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행정적·입법적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징수에 있어서의 형평성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10. 국세청장실(Office of the Revenue Commissioners)에서는 현재 납세자 150명당 한 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적 자원이 마련될 것이다.
11. 국세청장은 연체금의 축소 및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방법 및 계획표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12. 정부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한 자기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의 준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감사제도 및 적절한 벌금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13. 국세청장과 담당관들에게 부여되는 집행권의 범위가 법제 개혁위원회(Law Reform Commission)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재무징수개선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가능한 한 신속히 작성하도록 요청받았다.
14. 1만 파운드 이상의 공적 수주의 전제조건으로서 조세정리 인증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구비하는 것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모든 보조금제도에 도입되고 있다.
15. 국세청장과 사회복지부는 조율 및 통제가 좀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상된 신원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IV. 사회적 형평성 확대

◆ 개 괄

1. 정부는 사회급부, 보건 및 교육서비스 분야에서의 기회제공 측면의 사회적 형평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하고 있다. 다음 조항들은 사회복지, 보건, 교육, 주택 분야에서의 정부정책의 주요 목표들을 명시하고 있다.

◆ 사회복지

2. 정부는 사회복지 혜택의 전반적 수준을 유지하고 가용자원 한도 내에서 최저임금 수령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특별 조항 마련을 고려할 것이다.
3. 정부는 1988년에 농부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소득세 목적으로 소득 a5로 평가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회보장 보험료(PRSI)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4. 정부는 사회복지항소제도(Social Welfare Appeals System)에 특히 제도적 공정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변화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
5. 가구소득부가기획(Family Income Supplement Scheme)이 최근 향상되었는데, 이에 이어 동 계획의 세부 사안들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가 추가적인 수정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하여 시행될 것이다.
6.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마련 및 실행을 담당하는 자발적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방안이 시행될 것이다.

◆ 보건

7. 정부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건정

책을 모든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재검토가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8. 의료서비스 관련 주요 사안들을 제기하고 논의하는 협의서는 이미 발표된 바 있고, 이 문서와 그에 대한 다양한 반응은 주요 국가회의의 기저를 이룰 것이다. 이 협의서에 자세히 논의된 주요 정책 사안들 중 하나는 향후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111개 보건 및 장애 항목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포함하는 1차적 의료서비스 발전이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기관 지배적인 의료서비스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변화가 포함된다.

9. 추가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자금지원위원회는 지난 수개월 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다. 동 위원회는 권고안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받은 바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공평하고 포괄적이며 고효율-저비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필요한 자금의 범위와 원천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은 바 있다.

10. 『미래를 위한 계획 (Planning for the Future)』이라는 정신과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에 제시된 여러 제안의 도움을 얻어 많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기관에서 제공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동 정책의 추진에 전념할 것이다.

11. 노령인구의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의 노령인구를 위해 제공할 적절한 서비스를 재검토하고 구조 개편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문제의 다양한 측면들을 특별조사위원회가 검토해 왔으며, 보고서가 조만간 완성될 것이다.
12. 보건부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녹색(綠書: Green Paper)을 발표했다. 장애인을 위해서 고용 기회를 향상시키고, 건물과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장애인들이 독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수단을 찾기 위해서 ICTU와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동 녹색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13. 종합의료서비스계획(General Medical Services Scheme) 내에서나 병원 차원에서, 고가의 약값을 관리를 위해 정부는 모든 차원에서의 현존 서비스 공급체계와 협의의 강화를 통해서 약값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14. 정부는 농업지역사회와 자영업자들의 의료비 연체금 수준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고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이 앞으로 계속되고, 심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교육

15. 정부는 사회적 형평성을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의 교육제

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제도에 필요한 변화를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이유로 인하여 장애인에게 부담이 가는 일은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16.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유랑자들과 정신적·육체적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무부가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최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17. 정부는 취약계층의 교육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특히 역점을 두는 분야 중 하나가 좀 더 많은 2차 교육(second-level)을 마친 학생들이 고등교육(senior cycle)을 마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노동자계층 자녀들이 3차(third-level)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18. 2차 교육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에게 FAS,⁸⁾ CERT,⁹⁾ ACOT¹⁰⁾ 등의 훈련프로그램들과 직업교육 및

8) Training and Employment Authority: 1988년 설립된 아일랜드의 직업훈련과 고용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9) Fáilte Ireland: 관광산업 직업훈련 공공기관.

10) National Agricultural Advisory and Training Organisation: 농업관련 직업훈련 공공기관.

연수프로그램(VPT: Vocational Preparation and Training Courses)과 고용보조금 및 계획을 통하여 국가는 상당한 지원을 할 것이다. 정부는 우선 학생을 VPT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19. 가용자원의 한도 내에서 지역사회 교육 및 성인 읽기 프로그램들이 계속 추진 및 강화될 것이다.

◆ 주택

20. 노숙자들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신규 주택법안(Housing bill)이 다일 회의(Dáil Session) 기간 동안에 마련될 것이다.
21. 정부는 공적자본 프로그램(Public Capital Programme)을 통해 장애인의 주택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V. 고용

◆ 개괄

1. 정부는 본 계획의 금융·통화정책을 통해 저이자율과 저주태용자대부금율, 안정적인 환율, 저인플레이, GNP대비 국가

부채비율의 안정화와 그 후의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의 축소, 자본 이탈의 방지와 좀더 공평한 개인조세 부과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 같은 금융·통화환경은 투자 신뢰도를 높이고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며, 현 고용을 유지시키고 신규 고용창출을 창출해 낼 것이다. 고용전략의 목표는 소위 말하는 ‘지하’경제가 아니라 합법적인 경제에서 생존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본 계획은 이러한 취지의 일련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2. 국내 제조업 분야를 강화해서 다른 소규모 국가 경제들이 이미 실현한 바 있는 역동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가 제시하고 있는 바에 비례하여 추산해 볼 때, 아일랜드는 제조산업에 10만 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된다. 엄청난 수입량이 입증해 주고 있는 국내 제조업 분야의 취약점은 아일랜드가 현재 겪고 있는 높은 실업률의 원인 중 하나이다. 현재 8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들은 성공적이고 발전된 제조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기업의 직원 관리에 있어서의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제조업도 확대 및 다양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자연자원을 좀더 잘 활용하고 수출을 증가시키며 고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
3. 아일랜드는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해외 제조기업 유치활동을 할 것이다. 건실한 금융·통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좋은 유인요인이 될 것이다.

4. 아일랜드의 책임보험료는 아일랜드 기업들에게 비용상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주며, 특히 영국의 경쟁업체들과 비교할 때 이 점은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는 개인 상해건들에 있어서 배심원을 없애는 법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안전, 건강 및 복지(배링턴 보고서: Barrington Report)에 관한 심문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Safety, Health and Welfare at Work)의 주요 권고안을 실행하고 보험 회사들의 안전에 관한 체계 마련을 장려하는 방법을 통하여, 비용 축소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법률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피해 정도에 관한 지침서(Book of Quantum of Damages)의 발간을 지원하며, 재판 전 절차를 도입하며, 고등법원(Superior Courts)에서 사건이 다루어지는 빈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또한 검토될 것이다. 보험업계 대표들은 개선된 체계가 도입되면 책임보험료가 감소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5. 서비스산업은 독립적으로 또한 제조업 부문의 고용 증가의 승수효과를 통해서도 증가할 것이다. 관광, 국제서비스 및 특히 금융서비스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6. 국영기관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고용창출 활동을 발전 및 다양화시키도록 적극적으로 장려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신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면 또한 법안이 제출될 것이다.

7. 공익사업과 공공서비스 관련 국영기관들은 효율을 증대시키고 가격을 억제시키는 방안의 도입을 통하여, 현재 경제의 경쟁력과 고용창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고비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8. 본 계획하에서 완만한 임금인상을 실현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비교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케팅, 운영, 기술개발의 강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9.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산업별로 논의될 것이다.

◆ 제조업

10. 아일랜드의 경제 및 사회 전망은 세계시장을 겨냥한 양질의 무역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궁극적으로 달려 있다. 아일랜드의 제조업 고용정책의 목표는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2만 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이며, 이는 본 계획의 정책들이 발효되면서 실제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일자리 손실에 있어서의 상쇄 경향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제환경과 국내 산업육성에 대한 관심을 유

도하여 고용안정이 촉진될 것이라 예측된다.

11. 이를 이루기 위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산업진흥기관들의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간소화가 국내 제조산업의 성장을 위한 복합적인 대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이 대안에는 국내외에서의 개발과 마케팅, 기술적 변화와 혁신이 포함된다. 외국인의 대아일랜드 투자를 진작시키는 활동이 전문분야별로 강화된다.
- ② 국내 산업들의 시장 지향적·기술적 발전은 아일랜드 경제에서 탄탄히 자리를 잡은 소수의 아일랜드 기업들의 확장 및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무역마케팅부와 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 ③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마케팅, 제품개발, 연구개발 및 경영전문성의 강화로 재정지원의 대상을 변경하기 위해 국가보조에 역점을 둔다.
- ④ 1987년 예산안에서 해당조항이 마련된 바 있는 신무역 거래소들은 국내 기업들에게 새롭고 효과적인 수출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특정 해외시장에 있어서의 아일랜드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⑤ 아일랜드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연수보조금의 활용이 마케팅, 경영, 기술 및 무역언어능력을 교육에 집중될 것이다.
- ⑥ 국가보조금을 좀더 직접적으로 고용에 연계시켜 구체적인 고용 목표를 달성해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⑦ 다음 사항에 기반한 산업별 개발전략을 시행할 것이다.
 - (a) 국내 및 해외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잠재력 및 고용 잠재력을 파악
 - (b) 국내 천연자원
 - (c) 국내 고기술 노동력
 - (d) 업선된 산업 및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상승
- ⑧ 해외투자 유치는 외국인 투자가 아일랜드 경제로 통합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많은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12. 무역 및 마케팅 관련 국무장관은 현재 아일랜드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과 마케팅 교육과 인재개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마케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13. 산업별 접근법의 일환으로, 각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용기회를 파악할 것이다.

◆ 식품산업

14. 정부는 고용과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회가 존재하는 식품산업의 발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식품산업 진흥에 적극적인 국가기관들은 더 효과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장관 부속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식품산업의 개발 계획은 현재 마련 중이며, 수 개월 후 발표될 것이다. 식품 수출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전략이 마련될 것이다.

15. 정부 각 부처 및 국가기관들이 파악한 고용기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① 쇠고기산업: 향후 5년간 1천 개의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 ② 돼지고기가공산업: 향후 5년간 1억 4천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투자계획이 마련되었으며, 1천 개의 추가적 일자리창출이 예상된다.
- ③ 양고기산업: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증대가 향후 5년간 추가로 2백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 기타 제조업부문

16. 정부부처들과 국가기관들에 의해 지금까지 파악된 제조업 분야 고용 기회는 다음과 같다.

- ① 도구제작: 향후 5~8년 동안 생산량이 1년에 약 5백만에서 2천만 파운드로 증가할 수 있으며, 약 1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길 것이다.
- ② 자동차 부품산업: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을 겨냥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시장 점유율 증가 여부에 따라 최대 3천 개의 일자리가 이 분야에서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 ③ 기계공학: 기계공학산업에서 튼튼한 국내산 부품을 개발하는 것은 산업계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도구 제작 및 자동차제품 산업 분야를 위한 특별 방안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다수의 공기업들(예: Aer Lingus Sugar Company, ESB, Bord na Móna)은 이 분야의 전문적 영역들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이나 지식을 개발해 왔으며, 이러한 전문성이 만약 결합된다면 아일랜드 경제에 탄탄히 뿌리를 내린 실속 있는 제조업 프로젝트들을 생성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프로젝트의 실효성에 관해 현재 관련 공기업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④ 전자분야: 국내 전자산업의 규모는 5년 안에 배가 되어 약 3천 개의 일자리를 생성해 낼 것이며,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약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 ⑤ 의류: 수출을 5천만 파운드 늘리고 4천만에서 5천만 파운드 상당의 수입을 대체함으로써 약 3천 5백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⑥ 수공업제품: 수공업제품의 해외 소매 프랜차이징은 향후 몇 년 동안 1천 3백 5십만 파운드 상당의 수출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1천 개의 추가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추산된다.
- ⑦ DIY 제품(Do-It-Yourself: 손수 만들어 사용하는 제품들): DIY 제품들의 수출 진작은 2천 5백만 파운드까지 수출이 증가한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3백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 NADCORP¹¹⁾

17. NADCORP는 국내 기업들에게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이고 혁신적이며 발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산별 차원에서 NADCORP는 투자 기회를 위해서 특별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농업

18. 농업 및 식품산업의 확대는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중추적인 요소를 이룬다. 이 분야의 수출 의존도가 높고 유럽집행위원회의 지원체계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 시장 주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농업 분야의 발전을 강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19. 유럽연합의 예산규제 압박이 점점 명확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동농업정책(CPA)에 대한 대응에서, 이 정책의 근본적인 원칙과 또한 단일유럽특별법의 사회통합 진작 의무를 전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식품장관은 CAP개혁이 계속해서 아일랜드 농업 분야와 농가소득을 보호할 것이며, 아일랜드 식품산업의 발전을 촉진 및 진작시키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필

11) 정부출연 과학기술산업 벤처투자회사.

요하다면,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는 생산에 있어서 수량적 한계를 주는 것을 더 나은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20. 농가에게는 올 해가 최근 몇 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해였다. 정부의 목표는 농업분야의 신뢰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이자율을 상당히 낮추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농업 분야에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농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기타 중요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 육류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소고기 축우를 유지시키기 위한 신규 지원금 또는 대출금 제도 마련.
- 소 결핵을 척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새로운 조치가 시행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농업 분야 관련기관들, 여타 이해당사자들과 농업식품장관이 논의하고 있다.
- 유럽연합의 공동위원회는 농업식품장관의 요청에 따라 아일랜드에게 생산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규제를 소고기, 양고기, 곡물, 감자 등에 적용하는 것은 참여하는 농부들에게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를 높여 주는 작용을 할 것이다.
- 유럽집행위원회의 자금으로부터 최대한의 이득을 얻고 또 기업형 농촌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통합농촌지역개발 프 로그램을 시범 지역별로 우선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 서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수정 서부개발 프로그램은 1988 년에 도입될 것이다.

- 정부는 서부개발 프로그램 및 소외 지역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는 유럽집행위원회의 구조적 방안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자금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부는 3개 유럽경제공동체 구조기금(ERDF, ESF, FEOGA의 지침부문)으로부터 아일랜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화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농업관련 단체들은 현존 유로화 체계가 1년간 연장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다.
- AFT¹²⁾와 ACOT의 합병은 농업 및 식품산업이 좀더 현재 이 분야에서 생기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들, 예를 들어 최신 기술 발전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농업 분야에 새로 진출하게 된 젊은 농부들을 위한 연수교육에 또한 역점을 둘 것이다. 농업관련 단체들은 젊은 농부들을 위한 시설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인지세로 상쇄될 수 있다는 바탕하에 젊은 농업인 시설보조금제도(Young Farmer Installation Aid)를 재도입할 수 있다는 제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러한 제안들은 향후 예산안을 고려하여 호의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원 예

21. 원예장관실이 원예산업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축

12) Agricultural Institut: 농업연구소.

되었다. 이 분야를 위한 5개년 계획은 준비 중에 있으며, 수입 및 해당 기간 동안 수출을 약 7천만 파운드를 증가시켜 시장을 회복시키고, 그 과정에서 1천 5백~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이 개발계획의 준비와 실행은 Bon Glas라는 새로운 국가 기관이 맡을 것이다. Bon Glas는 법적으로 완전한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구축된 기관으로서 농업식품부, AFT, ACOT와 대학들을 통하여 원예산업에 이미 제공된 여러 가지의 국가지원 서비스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다.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해 이사회에 의해 이미 설립된 상품팀들(Commodity Teams)과의 협의를 제품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방안에 대한 권고안이 도출될 것이다.

◆ 삼림산업

22. 정부는 삼림산업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창출, 수입대체, 수출수익, 지역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동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삼림분야를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장관을 임명한다.
- 국영삼림을 상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국영기업의 설립. 동 기업은 새해 초에 발족될 것이다(잠정 이사회가 곧 발표될 것임).

- 농부들은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포함하여 가용 인센티브를 충분히 사용하여 삼림산업으로 진출하도록 지원받을 것이다.
- 1987년과 1988년에 정부는 각각 1만 1천 헥타르와 1만 3천 헥타르의 최대 식목 목표를 세운 바 있다.
- 삼림산업을 위한 EEC의 지원금 수준을 상당히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위에 언급된 이니셔티브를 이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

- 아일랜드의 국가 산림 기반을 대폭 증가시킨다.
- 1987년 국가 목재 생산을 5만³m³에서 1천 2백5십만³m³으로 늘린다.
- 식수조림산업에서 1987년, 1988년에 약 2백5십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식수조림산업하의 목재산업들에서도 추가적으로 5백 개의 일자리가 향후 3~4년에 걸쳐 창출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또한 향후 8~10년에 걸쳐 1천 개의 일자리로 증가할 수 있다.
- 국가 식수조림 계획으로부터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가 소위 말하는 지하경제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 국내 판매 및 수출 증가를 통하여 수입대체와 외국통화수익을 증가시킨다.

◆ 해양산업

23. 해양산업은 어획량의 3분의 2 증가, 어장 어류 생산량의 3배 증가, 어류 수출량의 2배 이상의 증가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2천 개의 신규 정규직과 2천 개의 비정규직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해양 연구소를 설립하여 해양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육로 어업의 잠재력은 만일 지역에서의 참여와 자금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약 1천 5백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 추산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일랜드의 자연자원 기반산업 및 국내 산업들의 발전을 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4. 정부는 일련의 인센티브를 아일랜드의 선박들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 도입하고 있다. 그러한 인센티브로는 조세인센티브, 지원금, 상업적 선박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NADCORP의 참여 등이 있다. 이는 전략적 선박들이 비상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해양장관은 선박제조, 해양 레크리에이션과 부대 문화시설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고용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정박지의 개발을 계획하고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의 결과는 언말 이전에 나올 것이다.

◆ 건설업

25. 건설업은 민간부문의 투자수요 회복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본 계획은 민간부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또한 건설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만간 시작될 세관관리소(Custom House Docks) 부지의 개발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설립된 건설산업개발위원회(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는 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것이다. 재정정책이 허용하는 한 지속 가능한 수준의 공공수요가 유지될 것이다. 기간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를 보충하고, 건설업에 있어서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기준에 맞는 민간 투자의 유치 노력을 할 것이다.
26. 정부는 또한 지하경제에 속하는 상당한 건설 분야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공공 건설 프로그램들에 있어서의 지하경제의 운영은 지금까지 주 계약의 가치가 1만 파운드를 상회하는 주 계약의 주계약자와 모든 하청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조세 의무완료인증절차(tax clearance certification procedures)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다. 정부는 건설산업연맹(Construction Industry Federation)과 아일랜드노총 내 건설노조(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 (Building Unions Group))에 의해 제26차 임금협약안에 사측과 노측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지하경제 활동을 감독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정부는 이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안들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개발위원회는 건설업계 내의 지하경제 활동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권고안을 발표할 것이다.

◆ 관광

27. 관광교통부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정 전략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 목적은 바로 추가적으로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5억 파운드의 관광수익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에 걸쳐서 항공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피하여 외국 방문객의 숫자를 두 배로 증가시켜야 될 것이다. 우리는 좀더 항공비용을 낮추고,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교통을 발전시키고, 좀더 목표지향적인 마케팅을 추구하며, 사업확대계획(Business Expansion Scheme)을 통해 관광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좀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 추진사항들은 해외관광 대행사업으로의 진출, 항공사들과 관광홍보기관들에 의한 좀더 유기적이고 일괄적인 관광상품의 모색 등이 있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개선은 또한 관광 분야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금융 및 기타 국제서비스

28. 세관관리소 부지에 있는 국제금융서비스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er)는 향후 3~4년에 걸쳐 약 7천 5

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 추산된다. 전체 세관관리소 부지의 개발은 성수기 동안 1천 5백 개의 건설업계 일자리를 창출하여 약 2억 5천만 파운드가 창출될 것임을 의미한다.

29. 다른 국제서비스는 컴퓨터서비스,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와 건축 및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상담 등의 분야에서 약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추산된다.

◆ 정부출연기관

30. 공공기관들은 본 계획하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제안들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접수된 일련의 제안들은 경제 효율성의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평가되고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계획에 추가되었다(부록 참고).

◆ 해외 비즈니스 상담

31. 국가기관들에 의한 해외 비즈니스 상담의 거래 총액을 향후 5년 안에 세 배 증가시키기 위하여(현재는 연평균 8천만 파운드를 기록하고 있음)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 해외 서비스 개발 잠재력이 있는 각 국가기관들에게 해외 비즈니스 상담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한 간단

명료한 5개년 개발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 국가기관들의 해외 비즈니스 상담 업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변화들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들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상 필요한 조치를 도입한다.
- 현재 가용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전담부서를 설립해서 적절한 국가기관들이 각 정부부처, 대사관 공사 및 국가기관들의 자원과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해외 비즈니스 상담 기회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수준 높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적절한 곳에 국가기관들이 여타 국가기관들과 민간부문 비즈니스 상담업체들과 공동으로 상담 기회를 개발하여, 해외 상담 업무를 확보하는 데 쓸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무역 및 마케팅장관이 이끄는 특별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해외사업 상담 기회를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한다.

32. 재무부에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고용기회를 지원할 수 있는 해외사업 상담 기회를 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 동안 병원과 의료센터들의 첨단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시행되었다. 해외 컨설턴트들이 의료장비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데 동원되었으며, 일부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장비에 대한 평균 1천만 파운드 상당의 유지 작업이 해외 컨설턴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작업의

상당부분이 사내에서 또는 지역 차원에서 좀더 비용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의 실현 가능성을 현재 보건부가 검토하고 있다. 이미 이 분야에 있어서의 진전도 있었다. 예를 들어 더블린에 위치하고 있는 탈라 (Tallaght)와 성 제임스 병원(St. James' Hospitals), 갈웨이 지역 병원(Galway Regional Hospital) 관련 브리핑 자료에는 의료 물리학/생물공학부서들의 설비계획에 대한 조항이 언급되어 있다.

◆ 근로자 협동조합

33. 현재 근로자 협동조합을 통하여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수의 국가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다. 인력기관들의 경우에 이러한 지원이 새로운 대표기관인 An Foras Aiseanna Saothair(FAS)하에 계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조항이 마련된 바 있다. FAS는 근로자 조합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YEA가 운영하는 지역사회 기업 프로그램(Community Enterprise Programme)하의 조합개발을 위한 지원 혜택이 25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근로자 조합은 고용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적절한 환경에서 근로자 조합들이 설립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FAS측에 협동조합개발협의회(Co-operative Development Council)의 설립을 위한 제안을 긴급히 검토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현재 노동부장관이 FAS의 설립에 앞서 신생 조합 기업들

에게 특별자문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범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현 기관기금(agency funds)과 IDA 출자금 및 비국영기금으로 이와 같은 시험적 운영의 일부 자금을 충당할 것이다. 동 협의회는 국가기관, 노조, 조합 단체, 북아일랜드 조합개발청의 공동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업무를 개발할 것이다.

34.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창출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노조와 고용주 단체들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공동의 타협을 통하여 이를 이루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수준 증대에 관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가 발족될 것이다.

VI. 노동법

◆ 보호법률

1. 노동부장관은 부당해고, 고용의 형평성 및 임금에 관한 법 조항들을 검토한 논의 자료를 조만간 발표하여 현존 법체계에 있어서 필요한 수정 조치들을 정립할 것이다. 동 논의 자료는 또한 고용안정과 비정규직의 지위에 관한 사안들을 다룰 것이다.

◆ 고용조건

2. ① 정부는 직장안전,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들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Oireachtas에 기초 법안(Framework Bill)을 제출할 것이다. 직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노사정 잠정 이사회(tripartite Interim Board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는 새로운 작업장 내 직업안전체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과도기적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 ②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하여 1984년 제정된 근로자 보호(고용주의 지불 불능시) 특별법의 범위를 66세 이상의 근로자로 확대적용할 것이며, 이는 고용주의 파산시 근로자들이 파산 전에 가입하였던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권한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고용평등

3. 노동부는 1974년에 제정된 차별금지(임금) 특별법과 1977년에 제정된 고용평등 특별법을 검토해 왔으며, 법률의 수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곧 발표될 논의자료에 명시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 제정은 고용평등의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대책일 뿐이다. AnCO¹³⁾는 여성들이 비전통적인 분야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13) 아일랜드의 청년 직업훈련, 인력서비스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1988년 설립된 FAS가 AnCO의 역할을 이어받았다.

FAS가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 근로자 참여

4. 정부는 국가기관에서 소이사회 차원에서의 근로자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부는 현재의 예산상의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조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자 참여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권고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 노사관계

5. 노동부장관은 노사관계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고용주 및 노동조합 단체와 협의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단체교섭과 분쟁해결을 위한 좀더 나은 체제를 설립하고 고용창출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계획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이 논의들을 가능한 한 빨리 결론짓고자 한다.

VII. 조사·감독 위원회

1. 정부와 본 계획의 참여 당사자들은 본 계획의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 상황, 특히 본 계획의 목표 및 목적 달성에 관한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특별중앙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동 위원회는 수상실(Department of Taoiseach)에서 주재할 것이며, 정부와 본 계획의 참가자들에게 보고할 것이다.

2.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적절한 기관들에게 자문 및 도움을 받을 것이다.
3. 사안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논의를 하거나, 또는 정부와 본 계획의 참여 당사자나 사안과 직접적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간 쌍무 협의를 할 수 있다.

부록

정부출연기관들의 제안

AER LINGUS 아일랜드 국영항공사

- 1990년까지 1백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Airmotive Ireland가 1천 2백만 유로 상당의 엔진정비 프로젝트의 개발을 하여 1996년까지 이를 150개의 일자리로 늘린다.
- Airmotive의 사내 정비 및 수리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1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 더블린 공항(Dublin Airport)의 부속 정비 및 수리 업무의 확대를 꾀하여, 초기에는 25개의 일자리를 유지시키고, 궁극적으로 업무가 발전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용 수준을 늘린다.
- 예비부품 판매사업의 확장으로 13개의 추가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 비행 시뮬레이터 시설의 확장을 통하여 15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며 4개의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생성한다.
- GPA, 타항공사 및 가능하면 보험회사와의 합작사업을 구축하여, 비행 재보험에 참여하여 1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Airmotive가 1천만 파운드의 비용이 소요되는 엔진 케이스 수리 시설의 개발로 최대 1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아일랜드에 호텔 투자의 추가적 확대를 통해서 3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AER RIANTA 아일랜드 공항관리 회사(예비 제안)

- Aeroflot과 Shannon Airport(쉐넌 공항)에서의 Aeroflot 비행기들의 페인팅 작업을 위해 합작사업을 구축한다.
- 산업 및 호텔을 포함하는 공항 부지를 개발한다.
- 해외 무관세 쇼핑에 있어서의 상담업무를 추진한다.
- 더블린 지역에서 Bunratty Castle(분라티 캐슬) 형태의 유흥시설을 개발한다.
- 더블린과 쉐넌 공항 및 가능하면 코크(Cork) 지역에 주요 회의 센터를 개발한다.
- 소포 및 페더럴 익스프레스(FedEx) 식의 운영에 특히 주안점을 둔 항공화물 업무를 복구한다.
- 최신 주문제작 업무를 더 많은 국제시장으로 확대하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 쉐넌의 식품 및 출장요리(catering) 사업에 있어서의 국제적 명성을 자본화한다.

ESB 아일랜드 전력회사

- ESB의 해외 상담영업을 대폭 확대하여 5백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1992년까지 연간 5천만 파운드의 매상을 올릴 것

이며, ESB의 해외활동에서 나오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여타 아일랜드 기업들에 의해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가적인 기회를 창출한다.

- 1992년까지 1백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업적 어업 분야에 있어서의 ESB의 활동을 더욱 발전시킨다.
- 코크(Cork)와 케리(Kerry), 레이트림(leitrim)과 도네갈(Donegal) 지역에 ESB가 10개의 소규모 수력전기시설을 건설하고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지원을 받아 최대 2백 명을 건설작업에 투입한다.
- ESB 내에 최고 수준의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개발 전담부서의 설립과 ESB 이사회에서 강력한 위임을 받아서 ESB의 국내 및 수출시장에서의 활동을 위한 새로운 개발 기회를 모색한다.
- 머니포인트(Moneypoint)에서의 전차-선적 시설을 개발한다.

BORD GÁIS ÉIREANN 아일랜드 에너지 공급회사

- 더블린에서 던다크(Dundalk)에 이르는 천연가스 송유관의 건설로 이 지역의 원예산업을 이롭게 하고, 가스를 북동 지역 주요 산업들에게 제공하여 건설단계에서는 2백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IRISH NATIONAL PERTOLEUM CORPORATION 아일랜드 국립 석유공사

- Whitegate Refinery(와이트게이트 정제소)에서의 방과제의

개발작업 (5십만 파운드 소요)

- Whiddy Island(위디 섬)에서의 시험적 어장 계획의 개발 및 확장

BORD NA MÓNA 아일랜드 토탄개발 회사

- 2천 2백만 파운드가 소용되는 11개 지역의 8천 6백 헥타르 이상의 추가적인 습지 개발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실시할 것인데, 신규 일자리와 동 계획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거의 5백 개에 달한다.

B.I.M. 아일랜드 수산국

- EEC의 어획 할당량을 충분히 활용하며, 할당량 외의 어종을 위한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여 어획량을 3분의 2 확대시킨다.
- 어획 선박들의 갱신 및 확대
- 아일랜드의 양식 어획량을 3배 증가시킨다.
- 어획 수출량을 1억 5백만 파운드에서 2억 5천만 파운드로 늘린다. 이는 양식 어류, 조개와 활량 미달 및 활당 외 어류에 근간을 둔 제품들의 수출 증대와 취급, 가공 및 마케팅의 개선을 통하여 이룬다.

TELECOM ÉIREANN 아일랜드 통신

- 통신 단말기 시장에서의 프로젝트 기회의 추가적인 개발

- 해외 바이어 상담 업무 강화
- 텔레마케팅 기회 개발
- 구체적인 해외시장을 겨냥한 데이터 기입(data entry) 서비스
- 케이블과 민간 네트워크 분야에 있어서의 BTE 계약 확대

AN POST 아일랜드 체신청

- 은행 및 소매서비스의 개발
- 우편주문 서비스 개발
- 소포/속달 우편서비스의 재구축
- 전자메일 서비스 제공

RTE 아일랜드 국영방송국

- RTE와 Radi Luxembourg 사이의 4백만 파운드 상당의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서 아일랜드로부터의 새로운 장파 라디오 서비스를 구축하여 광고 수익에서 1년에 3백만 파운드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동 신규 프로젝트는 건설활동에 애초부터 참가했던 사람들을 차치하고서라도 25개의 영구적인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 1백만 파운드의 기금을 독립 영화/비디오 제작 부문에 이용하여 RTE가 목표하는 좀더 국내 생산 지향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 Údarás na Gaeltachta에게 Gaeltacht에서의 프로그램/제작 후 시설을 제공하여 초기에 최대 4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 RTE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국제적으로 마케팅한다.

ÚDARÁS NA GAELTACHTA 겔탁트(Gaeltacht)지역 개발 기구

- Furbo, Galway에 시설을 가지고 있는 완전 소유 자회사를 구축하여 Gaeltacht 지역에서 정보기술 및 통신서비스를 개선한다.
- Gaeltacht 지역의 섬유산업 성장의 방해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EEC에 연구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신청한다.
- 다른 기관들과의 신규 농업작물종들을 시험적으로 상업적 개발을 하기 위하여 여타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ÓSTLANNA IOMPAIR ÉIREANN

- 순수 국내 자원을 통하여 현존 재산에 계속적인 투자를 한다.

YOUTH EMPLOYMENT AGENCY 청년고용청

-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종자돈을 제공하기 위한 회전투자기금을 구성함으로써 초기에 2백 8십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GERT

- 현존하는 연수교육프로그램의 확장을 통해 1년에 추가적으로 3백 명의 훈련생을 교육시킨다.

제3장

핀란드의 사회협약

◆ 배경

핀란드는 사회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파트너들이 국가의 사회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노총과 사용자 조직은 정부와 함께 소득정책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벌이는데, 이 협약에는 임금, 고용, 노동시장정책뿐 아니라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양성평등, 사회복지와 연금, 조세정책 등도 포함된다. 이 협약의 당사자는 노사 대표이며, 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협약 체결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부 대표는 교섭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득정책협약은 노사정 삼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한 정책수단을 행사할 것을 수용함으로써 협약을 보증한다. 최근 수년간 그러한 정책수단으로는 휴일수당 보전, 소득연계 실업수당,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조세감축 등이 있었다. 소득정책협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체결된다.

1968년 이후 사회적 파트너들과 정부는 소득정책과 관련한 여러 협약을 체결해 왔는데, 일반적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보수와 노동조건의 개선, 그리고 사회보장시스템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이슈들에 더하여 최근 협약들은 실업을 감소시키고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는 수단과 같은 거시경제적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의 협약들은 상세한 수단들을 나열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사회경제정책의 틀을 수립하는데, 이는 작업장 수

준의 결정에 보다 많은 재량의 여지를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적인 변화들은 경제구조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분권화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임업 중심이었던 핀란드 경제는 서비스와 정보산업이 지배적인 사회로 변모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에 핀란드는 경기침체로 고전하였다.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물가는 치솟았다. 실업률은 1990년의 3.3%에서 1993년에는 무려 17.2%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전반에는 생산성과 경쟁력, 그리고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소득정책협약의 가장 중요한 토론 의제가 되었다.

1994년과 1995년에는 소득정책협약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새로운 교섭의 개시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포괄적인 협약을 맺기보다는 보상 문제에 집중하고자 하였으며, 중앙협약보다는 지역의 교섭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 포괄적인 협약에 관한 협상이 재개되었다. 이는 핀란드의 EU 가입(1995년)이 사회협약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쟁력과 고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경제회복 프로그램에 착수하였다. 유로를 매개로 한 EMU 가입을 앞두고 1998-99년의 포괄적인 소득정책협약이 다시 한번 교섭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른 EMU 가입을 위한 수렴조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정책협약/사회협약의 오랜 전

통은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긍정적인 정치경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초기에는 산업평화를 유지하는데 중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고용을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즉 많은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핀란드의 국가전략인 것이다.

아래에 소개하는 2003-2004 소득정책협약 역시 이러한 전통 속에서 도출되었는데, 금번 협약에서도 목표는 국민경제와 고용상황의 지속적 개선을 지원하고 경제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에 두어졌다. 그러나 교섭은 매우 어렵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보수와 노동의 질에 관한 쟁점들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90% 이상의 임금소득자들이 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협약을 승인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협약을 조세감면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데 동의하였다.

(조성재 연구위원)

2003 - 2004 소득정책 협약

본 협약에 서명하는 중앙조직(이하 서명 당사자)들은 서명 당사자간에 체결된 2002년 11월 18일자 예비 소득정책 협약(이하 예비협약)에 의거하여 민간 및 공공부문의 부문별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 갱신되었음에 합의한다. 이에 서명 당사자들은 2003 - 2004 소득정책에 대한 예비협약을 비준하는 바이다.

2002. 12. 2. 헬싱키

핀란드 교육/전문직 노동조합연맹(AKAVA)

교회 사용자위원회(KiSV)

지방자치단체 사용자위원회(KT)

핀란드 서비스업경영자연맹(PT)

핀란드 노동조합중앙조직(SAK)

핀란드 사무직노동자연합(STTK)

핀란드 경영자총연합회(TT)

국영 사용자국(VTML)

I. 목 적

본 협약은 고용을 강화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구매력 성장을 지속하며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순조로운 경제발전과 고용상황의 개선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표들은 또한 고용 개선과 감세를 목표로 하는 핀란드 정부 정책에 의하여 지지된다.

II. 민간 및 공공부문 단체협약에 대한 결정

II.1 협약 기간

현재 단체협약들에 따른 유효 기간과 관계없이 유효 기간은 2003년 1월 31일자로 종료될 것이며, 여기에서 정해진 수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갱신되어야 한다. 새로운 단체협약은 2003년 2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한다. 단, 본 예비 협약의 서명 당사자들이 소득정책협약에 서명을 하여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새로운 단체협약 기간은 2005년 2월 15일자로 종료된다. 그러나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이 2003년 1월 31일 이후에 종료될 경우 해당 단체협약의 당사자(이하 부문별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협약은 2005년의 같은 일자에 종료된다.

II.2 임금 및 급여 조정

2003년

II.2.1 일반 인상

임금 및 급여 일반 인상은 2003년 3월 1일자로 시작되는 급여 기간 또는 이 일자 이후 시작되는 최초의 급여 기간부터 시간당 17센트(cent) 또는 월 28.39 유로(euro), 어떤 경우든 최소 1.8%에 달하는 폭으로 이루어진다.

II.2.2 부문별 수당

전반적 인상폭 외에도 임금 및 급여는 II.2.1항에서 언급한 일자로부터 0.8%의 부문별 수당(allowance)만큼 인상된다. 부문별 당사자들은 이 부문별 수당 전체 또는 일부를 회사, 국(bureau), 지방자치체, 또는 사업장 수준으로 이전하여 지역의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되는 수당은 지역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확인한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부문별 수당 또는 회사 수준 수당의 사용은 차후의 일자로 연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부문별 또는 회사 수준의 수당이 늘어나는 일은 없다. 부문별 수당 또는 회사 수준의 수당이 차후에 사용될 경우에는 지급의 지연에 대해 해당 금액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만일 부문별 또는 회사 수준의 수당 사용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백분율에 따라 일반 인상으

로 지급한다.

II.2.3 균등수당

부문별 당사자들은 2003년 3월 1일자로 시작하는 급여 기간 또는 본 협약일 이후 시작하는 최초의 급여 기간부터 균등수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수당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관련 단체협약 내의 모든 종업원 가운데 여성의 백분율 비율 (예: 50% = 0.50)에 계수 0.45를 곱한다. 그리고 집단협약 내 종업원 가운데 시간당 9.88 유로 내지 월 1,650 유로 미만의 수입을 갖는 사람들의 비율에 계수 0.15를 곱한다. 이 두 산식의 합을 더한다. 서명 당사자들은 2001년 4/4분기 또는 그에 해당하는 통계 기간의 통계 정보를 활용하여 모든 부문에 대한 균등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균등수당은 각 부문 당사자간의 협약에 따라 사용될 것이다.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균등수당은 백분율에 따라 일반 인상으로 지급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수당에 관한 사용 및 효력 개시일, 방법 등은 II.2.2항을 따른다.

균등수당의 사용에 대해 합의함에 있어 수당을 결정하는 근거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이 수당은 업무 요건, 교육 및 훈련의 정도와 급여 수준이 맞지 않는 여성의 보수를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부문의 급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2.4 차등(tariff) 임금 및 급여

2003년 3월 1일자로 민간부문 단체협약에 포함된 차등 임금 및 급여는 각 부문의 일반 인상폭에 맞게 백분율이나 유로, 센트 등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해당 부문의 일반 인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 수당 내지 균등수당을 사용하지 않는 한 부문별 일반 인상은 본 예비 협약에 따른다.

차등 임금 및 급여 인상은 각 부문별 일반 인상폭을 초과할 정도로 개인 임금 및 급여를 인상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집단 협약에 근거한 지급 체계를 갱신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부문별 또는 균등수당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을 완전히 처리해야 하며 부문별 당사자들은 비용을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에 대해 합의의 도출해야 한다. 부문별 당사자들은 II.2.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문별 수당을 이전하여 회사 수준에서 비용을 처리하는데 합의할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2003년 3월 1일자로 최저임금 및 급여, 기본 임금 및 급여, 그리고 기타 차등 임금 및 급여를 일반 인상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상한다.

II.2.5 급여 증액(pay increments)

교대 업무에 대한 증액 및 기타 특수조건하의 업무에 대한 증액은 2003년 3월 1일자로 해당 부문의 임금 및 급여 일반 인상 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액은 해당 계산 금액에 의거하여 이미 인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증액은 센트에서 사사오입한다.

2004년

II.2.6 일반 인상

임금 및 급여 일반 인상은 2004년 3월 1일자로 시작되는 급여 기간 또는 이 일자 이후 시작되는 최초의 급여 기간부터 시간당 16센트 또는 월 26.72 유로, 어떤 경우든 최소 1.7%에 달하는 폭으로 이루어진다.

II.2.7 부문별 수당

전반적 인상폭 외에도 임금 및 급여는 II.2.6항에서 언급한 일자로부터 0.5%의 부문별 수당(allowance)만큼 인상된다. 부문별 당사자들은 이 부문별 수당 전체 또는 일부를 회사, 국(bureau), 지방자치체, 또는 사업장 수준에서 이전해 지역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되는 수당은 지역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확인한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부문별 수당 또는 회사 수준 수당의 사용은 차후의 일자로 연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부문별 또는 회사 수준의 수당이 늘어나는 일은 없다. 부문별 또는 회사 수준의 급여액이 차후에 사용될 경우에는 지급의 지연에 대해 해당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불하여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만일 부문별 또는 회사 수준의 수당 사용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백분율에 따라 일반 인상으로

지급한다.

II.2.8 차등(tariff) 임금 및 급여

2004년 3월 1일자로 민간부문 단체협약에 포함된 차등 임금 및 급여는 각 부문의 일반 인상폭에 맞게 백분율이나 유로, 센트 등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해당 부문의 일반 인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 수당 내지 균등수당을 사용하지 않는 한 부문별 일반 인상은 본 예비 협약에 따른다.

차등 임금 및 급여 인상은 각 부문별 일반 인상폭을 초과할 정도로 개인 임금 및 급여를 인상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집단 협약에 근거한 지급 체계를 갱신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부문별 또는 균등수당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을 완전히 처리해야 하며 부문별 당사자들은 비용을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부문별 당사자들은 II.2.7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문별 수당을 이전하여 회사 수준에서 비용을 처리하는 데 합의할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2004년 3월 1일자로 최저임금 및 급여, 기본 임금 및 급여, 그리고 기타 차등 임금 및 급여를 일반 인상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상한다.

II.2.9 급여 증액(pay increments)

교대 업무에 대한 증액 및 기타 특수조건하의 업무에 대한 증액은 2004년 3월 1일자로 해당 부문의 임금 및 급여 일반 인상

액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액은 해당 계산 금액에 의거하여 이미 인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증액은 센트에서 사사오입한다.

II.3 부문별 급여 인상, 협상 조항 및 기타 부문별 특별 제도

임금 및 급여 인상은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들어 있는 2003년 이후의 일반 급여 인상관련 협상조항을 이행하는 대신 본 협약에 의거하여 이행한다.

그러나 본 협약이 부문별 급여 인상이나 급여 체계의 발전 내지 2003년 이후 실시될 부문별 특별 제도에 관해 앞서 체결된 집단협약의 해당 조항들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협약 중에서 2003년 이후의 임금 및 급여 인상 일자에 대해 본 협약에서 합의된 것과 상이한 일자를 포함하는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부문별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전에 합의된 일자를 적용한다.

II.4 급여지수 연동조항(Pay indexation clause)

서명 당사자들은 2003년 11~12월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상황, 물가 및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검토한다. 소득정책조정위원회(Incomes Policy Settlement Commission)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2000=100)를 평가한다. 서명 당사자들이 만장일치로 달리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한 다음의 지수 조항을 실시한다. 소비자물가지수(2000=100)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2.7% 이상 상승하면 다음 일반

인상과 관련된 임금 및 급여는 2.7%를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상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는 지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지수의 상승은 백분율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한다.

그러나 0.4% 이하의 상승에 대해서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득정책조정위원회는 임금 및 급여의 지수관련 인상의 규모에 대해 관련된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II.5 평가 조항

서명 당사자들은 2004년 5월에 회의를 갖고 본 협약의 목적이 어느 정도까지 달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소득의 증가를 모니터링 한다. 소득을 모니터링할 기간은 2002년 4/4분기부터 2003년 4/4분기 또는 그에 상응하는 통계 기간이다.

소득정책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모니터링 활동은 협약의 목적을 고려하여 협약 기간 동안 소득의 증가가 모든 종업원과 여러 부문에 걸쳐 얼마나 고르게 배분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다양한 부문과 관련된 모니터링 작업에 관해서는 서명 당사자들이 정의를 내린다. 임금 및 급여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재할 시에는 기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사용해도 된다.

서명 당사자들은 필요한 방법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어느 서명 당사자든 위에서 설명한 모니터링 과정이 하나 이상의 부문에서 본 협약이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조정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된 조정

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가조정인(National Conciliator)이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맡는다. 국가조정인은 해당 당사자의 제안에 근거하여 서명 당사자 소속 회원이 아니면서 본 협약에 참여하는 부문별 당사자의 대표성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위원회 회의에는 반대하는 단체의 대표와 위원장이 참여한다. 위원회가 표결을 실시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위원회 모든 위원이 다른 의견을 가질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다.

단체협약 당사자들이 하나 이상의 서명 당사자에 소속된 회원일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서명 당사자 각각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해당 단체들은 양편에 동수의 표결권을 갖는다. 해당 단체 대표자들의 표결이 대안적 해결책을 두고 갈리게 될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지지하는 의견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에 참석한 단체와 해당 부문별 당사자들에 대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조정위원회로 사안을 이관하고자 하면 이관 요청은 2004년 8월 13일까지 해야 하며 위원회는 2004년 9월 30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른 여하한 임금 및 급여 인상 이행 절차는 각 부문별 당사자에 의해 결정된다. 해당 당사자들이 조정안 이행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인상은 전체에 대해 균등한 규모의 비율로 다음 번 일반 인상에 연결되어 지급해야 한다.

II.6 여비(travel allowance)

본 협약이 다루는 2003년, 2004년 및 2005년 일부 기간에 대

한 비과세 여비 및 그 근거에 대한 결정은 국세청(National Board of Taxes)의 관련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단체협약이 결정한 여비가 국세청이 정한 여비 수준에서 벗어날 경우 2003년 2월 1일, 2004년 1월 1일, 2005년 1월 1일자로 해당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이전의 관행과 일치하도록 한다.

II.7 지방자치체의 생활비 분류

협약 기간 동안 동 단체협약의 임금 및 급여 조항은 정부 판결 25.11.1999/1090에 의거한 지방자치체 국가 생활비 분류에 따른다.

III. 지속적인 협상

III.1 지속적인 협상 체계의 목표

협약 기간 동안 다양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단체협약을 발전시키고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장기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지속적인 협상 체계 내에는 중앙 및 부문별 수준에서 노동시장 단체들이 노동생활을 발전시키는 공동 사업과 관련하여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노동생활은 공동개발사업과 우수 관행의 강조를 통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III.2 지속적인 협상 체계의 원칙

서명 당사자들간의 교섭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이 상호 및 호혜적 관계에 있어 지속적인 협상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은 협약 기간 동안 처리 또는 협상할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내놓을 수 있다. 해당 당사자들은 자신들에게 제시된 제안에 근거하여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제안을 처리하기 위해 기꺼이 서로 협력한다.

당사자들은 현재의 교섭 체계, 계약 관계, 협상 관행 및 노동 시장 관행을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지속적인 협상 체계에는 연금정책이나 실업급여 등 노사정 3자 협상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

III.3 지속적 협상을 위해 회원 단체에 주는 권고

중앙조직들은 회원 단체들에게 각 부문의 교섭 체계와 계약 관계에 있어 개선 필요 내지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또 지속적인 협상 체계 원칙을 채택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IV. 노동생활의 발전

서명 당사자들은 노동생활의 발전과 관련한 문제들에 합의한다.

V. 지식과 역량의 유지 및 개발

서명 당사자들은 지식과 역량의 유지 및 개발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합의했다.

V. 고용정책

서명 당사자들은 고용정책에 관한 공동 입장에 합의했다.

VII. 범위, 효력, 효력 개시일

서명 당사자들은 그 회원 단체 전체가 늦어도 2002년 11월 30일까지는 본 예비 협약에 의거하여 단체협약을 갱신하도록 요청하고 아래 언급한 공통 확인서가 중앙조직에 기한에 맞게 제출되도록 한다. 부문별 당사자들은 본 예비 협약이 반드시 상기 설명한 사항을 기준으로 이행되도록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당사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과 모순되지 않는 부문별 특정 사안에 대해 협약을 도출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다음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2002년 11월 18일 서명한 예비 소득정책협약이 본 소득정책협약으로 비준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무효이다.

부문별 당사자들은 본 협약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여하한 단체협약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 확인서는 늦어도 2002년 11월 30일 오후 4시까지 해당 당사자들의 중앙조직 및 국가조정인실에 전달되어야 한다.

본 예비 협약의 서명 당사자들은 상기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부문별 당사자 협약이 체결되는 즉시 본 협약을 소득정책협약으로 비준한다. 소득정책협약은 2002년 12월 1일 당사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단, 예비 협약의 모든 서명 당사자가 동 협약을 승인해야 한다. 서면 승인 통지서는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서명 당사자들은 본 예비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모든 부문별 당사자들이 해당 부문별 협상을 시작하여 본 협약을 이행할 것을 장려한다.

헬싱키, 2002년 11월 18일

핀란드 교육/전문직 노동조합연맹(AKAVA)

교회 사용자위원회(KISV)

지방자치단체 사용자위원회(KT)

핀란드 서비스업경영자연맹(PT)

핀란드 노동조합중앙조직(SAK)

핀란드 사무직노동자연합(STTK)

핀란드 경영자총연합회(TT)

국영 사용자국(VTML)

제4장

호주의 사회협약

◆ 배경

1983년 재집권에 성공한 노동당 정권은 1996년 자유-국민당 연합정권에 의해 물러날 때까지 호주노총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노사관계 정책에 임했다. 1983~91년 사이에 노동당 정부의 수상이었던 Bob Hawke가 ACTU의 전 위원장이었으며 1991년에 노동당 정권 수상이 된 Paul Keating 역시 ACTU와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다. 호주노총은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호주노동당(ALP)과 호주노총 간의 유대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가 사용자 배제적인 친노조(pro-union) 일변도 정책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시기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맞춰 기존의 중앙집중적 노사관계를 개혁하는 쪽으로 갔으며, 노동조합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응하는데 힘을 쏟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호주의 경기침체 국면은 198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증가하는 무역적자와 외채, 그리고 높은 관세장벽의 철회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주달러의 평가절하 압력을 낳고 이에 노사정 모두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공감했다. 노동당과 노총 양 당사자는 1980년대 초 국내외 경제위기의 본질을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파악했다. 이전 경제학자, 특히 통화주의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양 당사자들은

전통적인 경제정책인 통화·환율정책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고, 물가상승을 잡으면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합의 내용의 핵심은 가격 및 소득정책이다. 이들은 이전 자유당 정부의 임금동결 방식에 반대한다. 임금동결은 임금의 구매력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악화시킨다. 임금동결에 따른 유효수요의 감소와 이로 인한 경기불황, 실업의 가속화를 피하고 소득과 부를 사회적 약자층에 재분배하는 소득 및 가격정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합의의 핵심이다.

먼저 가격·소득정책상 가장 큰 목표는 국내생산성 증가분의 공정한 분배를 통하여 호주의 실질가처분소득을 공평하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물가상승이나 실업유발을 추가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실질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임금은 여전히 중앙집중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공평성이나 노사관계 안정에 중요하며 명목임금의 인상보다는 물가억제와 하부 소득계층의 세액부담 경감을 통해 실질가처분소득을 향상시킨다. 아울러 간접세가 역진적이고 물가상승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상이 초기 사회적 합의의 골자이다.

호주의 사회적 합의는 1996년 노동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때까지 부분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지속되었고 새롭게 협약

에 반영된 부분들은 대부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유연화를 반영하면서도 노동권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조화시키는 데 있었다.

(이장원 국제협력실장)

1983년 경제정책 관련 노정협약 합의문

호주노동당 (ALP), 호주노동조합협의회(ACTU)

I. 도 입

◆ 소득 및 물가정책의 필요성

본 협약의 당사자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논의를 해왔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급진적이고 새로운 정책 접근법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협약 당사자는 어떤 급진적 혁신적 정책접근법도 완전고용이라는 양 당사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도 동의하였다.

대내외적 요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냉엄한 결론은 대안적 정책 접근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회복이 나타나고 실직자들의 곤궁을 줄일 수는 있으나, 완전고용으로의 복귀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빠른 해결책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정책의 꾸준한 적용을 통해서라면

현재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의 달성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초유의 사태

지속적이며 악화일로에 있는 대내외적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특징은 역사상 처음으로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런 현상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고, 각국 정부들이 적절한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은 고실업에 고인플레이가 겹치게 되면, 아무리 다양하고 응용된 재정¹⁾·통화·환율정책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책에만 의존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완전고용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경기회복과 그 정도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속적 경기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왜냐하면 경기회복은 곧 인플레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는 인플레 억제를 위한 수축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회복곡선의 시작점을 잘라 내는 꼴이 되어 완전고용만이 아니라 준완전고용 상태로의 회복도 저지되는 것이다.

이로써 한 국가는 실업의 덫에 걸리게 되고, 과거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어떤 실업률에서건 인플레는 계속 상승하려는 경향

1) 재정정책이란 국가정부의 사회임금 및 조세정책을 뜻한다.

이 있으므로 실업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 완전고용

현 경제상황은 협약의 두 당사자들이 완전고용이라는 목표에 대해 지고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대량실업이 지속되고 있어서, 인플레 억제책으로 실업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은 활용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호주 및 외국 정부들이 경제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수적인 경제이론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은 실업과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강조해 준다.

호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플레의 점진적 저하를 통해 인플레 기대심리를 없애 인플레 없는 경제팽창을 달성할 것이라는 정책효과를 가정하고 통화주의²⁾정책을 채택하였다.

◆ 참담한 정책 실패

실제로 통화정책은 하나같이 실업률과 금리의 나선형 상승, 성장률 저조 또는 마이너스 성장, 생활수준 담보 또는 하락, 고인플레이션 지속으로 귀결되면서 참담한 정책 실패로 드러났다.

최근 인플레와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나라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성장률 및 신뢰도가 하락하여 추가비용이 초래되는 등 불황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2) 통화주의정책이란 경기 둔화 또는 수축을 통한 인플레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복합 경제정책이다. 통화주의정책은 임금을 이익으로, 빈곤층에서 부유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기도 한다.

프레이저 정부가 통화정책을 채택했던 호주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자원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친 상쇄효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현 정책이 지속된다는 근거하에 예측된 마이너스 성장, 두 자리수 실업률 및 물가상승, 경제회복 조짐 부재와 더불어 1983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OECD³⁾ 국가 모두가 통화주의 정책노선을 채택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실업률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통제함으로써 경제난국을 타개해 나간 국가들은 바로 통화정책을 지양하고 협의를 통해 소득 및 물가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었던 국가들이었음은 대단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절호의 기회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교섭의 양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된 소득 및 물가정책을 개발하여 노동당 정부가 이를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한 정책은 상충되는 소득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저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제공하게 되므로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와는 달리 고용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게 되고, 생활수준이 동반 향상되며, 물가상승이 뒤따르지 않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게 되면, 예산·통화정책을 활용해서 경제성장 및 고용촉진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실업이 줄고 생활수준이 개선되는 것이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약자.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와 산업화 국가들이 속해 있다.

◆경험

협약 당사자들은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근거로, 소득 및 물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보수적 공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공격은 우리가 정책운영 효과가 미진했던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반면교사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 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소득 및 물가에 대한 협약의 장기적 이점은 프레이저 정부가 임금동결이라는 형식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근시안적인 정치적 편의주의와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임금이 동결되면 비임금 소득자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임금 구매력이 대폭 하락하고, 인구 대다수의 임금 소득자의 생활수준이 상당 수준 하락한다. 또한 모든 세금이 인상되고, 고용주들은 자유롭게 물건 값을 인상하게 된다.

◆편향적

이 같은 편향적인 불평등 임금정책을 명백히 불공평하다고 보는 본 협약 당사자들은 이를 전적으로 거부한다. 노사대립을 조장하고, 저실업률·저인플레이션의 동시 달성이라는 경제의 기본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동결을 통해 고용지원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프레이저 정부의 단언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국민 대다수의 실질임금 대폭 삭감과 그로 인한 수요 감소는 경기침체 및 실업 확대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임금동결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비인플레이 성장 달성이라

는 당초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될 뿐만 아니라, 동결조치로 초래된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로 그 달성이 더욱 어려워진다.

◆ 불평등

사실상의 소득정책이 중산층 이하 저임금 소득자들에게 주된 부담을 지우는 과정은 정부의 조세 및 지출정책을 통해서도 발생한다. 양 당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프레이저 정부의 정책은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일차적 소득분배 및 부차적 재분배 정책을 통해 프레이저 정부가 충분히 확인시켜 준 것은 당 정부에도 분명히 소득정책이란 것이 있었으나, 산업 또는 경제에 초래할 결과와는 상관없이 보다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완전히 편향된 접근법이었다는 사실이다.

소득 및 물가정책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시행된다면 임금동결이라는 단순한 처방이 초래할 모든 폐해를 극복해 줄 수는 있으나, 이 문서에 서술된 정책들이 현 경제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본 협약 당사자들은 이해하고 있다.

◆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소득 및 물가에 기반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하나된 정책 기조의 틀 안에서 정책 조치들이 실업 완화 및 저소득층으로의 부와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해야 하고, 정책 잠재력의 최대 실현

을 위해서는 주요 참여자, 즉 노·사·정 모두가 경제의 복잡성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협약 당사자는 양측이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해결책 모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공포하는 것은 사과를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양자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를 앞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합의에 기반한 인간적 정책을 통해 어려움에 맞서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가 결과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음을 천명하기 위함이다.

II. 소득 및 물가정책의 특징

이 문서에 열거된 정책목표들의 달성을 위해서는, 상충되는 소득 요구를 현재보다 더 낮은 실업률 상태에서 합의시키기 위한 직접적 프로세스 실시를 포함하는 정책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물가와 모든 소득에 적용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협약 당사자는 이 같은 정책 접근법의 목표는 임금·봉급생활자 및 무소득계층을 포함한 모든 호주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장기적으로 국민생활 수준은 국가 생산성에 의해 측정되는 산출 개선 분배를 반영하는 선까지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가처분소득의 평등분배를 달성한다는 목표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민생활 수준의 유지 또는 개선은 단순한 임금인상이 아닌 일

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인식되었다.

양 당사자는 전 호주 국민의 생활수준을 일정선에서 유지하고 또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간다는 목표에 부여된 중요성을 인정한다. 소득 및 물가정책을 통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현실과 양측이 부여한 우선순위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동시에 낮추기인 점을 감안할 때 편파적인 우선순위 및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

◆ 상세 내용

이 문서는 노동당 정부 출범 후 집행될 정책의 상세한 내용을 제시한다.

정책 필요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양측은 모든 정부가 나름대로의 소득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자유국립국가당(LNCP: Liberal National Country Party -이하 자유당) 정부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책의 주된 경제적 부담이 임금 및 봉급생활자, 실직자, 사회보장제도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정부의 조세·지출정책 또한 실질가처분소득 분배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자유당 정부의 정책들은 실질가처분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대폭 확대해 왔다.

◆ 프레이저 정부 거부

협약 당사자들은 프레이저 정부의 과거 정책들이 불공평하다는 점을 들어 전적으로 거부한다.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저실업

를, 저인플레이션의 동시 달성이라는 경제의 기본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정반대 접근법 채택

기존 접근법과는 반대로 종합적이고 공평하고 대립이 아닌 협력에 기반한 정책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정부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로 도출된 정책
- 물가, 임금, 비임금소득, 조세, 사회적 임금(직접적 소득이 전 또는 서비스 제공에 의해 국민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지출)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 경제의 기본 목표 및 공평한 소득재분배와 관련된 정책

이 같은 정책은 반동적인 보수적 경제정책들이 초래한 암울한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III. 소득 및 물가정책 구성요소

양측은 당 소득 및 물가정책이 어느 정도까지의 유연성은 유지하되, 정책의 수용 및 지속에 없어서는 안 될 효과적인 물가 소득정책이 갖는 다양한 기본적 특징을 갖고 있음에 동의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정책 목표는 임금·봉급소득자와 생활보호 대상자인 비소득계층의 생활수준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생산성 변동과 함께 개선될 것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 정부 정책은 종종 있는 사례와는 달리 임금뿐 아니라 물가와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 정책 취지는 공평하고 분명한 소득재분배의 달성이어야 한다.
- 관련 주체들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 정책은 모든 단계에 걸쳐 수용적이며 지원적이어야 한다.

IV. 구체적 정책 합의사항

◆ 물가

물가 당국의 설립을 통해 법적 기준이 마련되고, 당국은 그 기준에 의거해 관할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시도한 가격인상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일반적으로 업계 가격을 정하게 되는 대기업을 당국의 감시하에 둔다면, 모든 기업들의 가격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법적 기준은 사업 유지·확장에 필요한 수준을 초월하는 이익 추구 금지, 직원들의 실질임금 보호, 불필요한 비용 상승을 가격 인상분에 반영하지 않을 것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해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물가 및 국가 생산성 증가에 의해 정당화되는 선을 초과하는 수준의 임금인상은 정상적 가격인상의 근거로 허

용되지 않을 것이다.

물가당국은 관련 기업의 비용 및 가격인상이 실제로 적용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적 절차 면에서 이전 PJT 때와 비교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거래관행법(Trade Practices Legislation)은 보다 효과적인 경쟁 촉진과 과도한 가격인상 가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합병관련 규제 강화,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 가격 담합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불공정거래에 대한 소비자 권익보호 확대를 통해 강화될 것이다.

V.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책정에 관한 원칙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 또는 실업에 추가 동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어야 한다. 실질임금 수준의 유지는 동의를 거쳐 핵심 목표의 하나로 설정되었다. 본 목표는 경제위기 상황인 지금도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해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금책정 시스템은 평등 및 산업관계 관점에서 중앙시스템이 바람직하고, 양 관련 당사자는 이를 계속 옹호할 것이다.
- 총 생활비조정 시스템 채택은 임금·봉급 구매력 보호를 위해 노사정 협의에서 강력하게 지지될 것이고, 노동심판소에

회부될 것이다.

- 과다상여금 지급이 존재하는 경우, 지급된 비율과 최소비용 상여금제 기준 액수 사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부는 현실적인 수준 유지를 지원할 것이다.
- 임금 및 봉급생활자는 실질임금 인상 또는 노동시간 단축 또는 둘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국가 생산성 향상의 수혜를 공유할 것이다.
-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피력함에 있어서, 노조측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존중하며, 요구의 정도에 대해서 정부측과 협의에 임할 것이다.
- 양 당사자는 중앙시스템의 필요조건이 충족되면, 특수하고 이례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요구가 없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추가 요구에 관련한 조항은 상여금 및 과다상여금 지급에 모두 적용될 것이다.
- 소폭의 비용 추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 관행 또는 절차의 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달성을 근거로 한 협상은, 새로 마련된 기준이 노동계의 기준 혹은 부상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또 가능하다면 해당 기업 혹은 산업 내 근로시간 표준화를 포함하고 있다면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VI. 비임금소득

비임금소득에는 배당금, 자본이득, 임대료, 이자, 이사직 수당,

의사, 변호사, 점포 운영자, 자영건축업자, 무역업자 등 비법인체의 소득이 해당된다.

종합적인 물가 및 소득 당국의 부재하에서는 비임금소득 대부분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일련의 구체적인 간접조치는 가능하다. 이를 통해 비임금 소득의 수준에 상당 정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해당 정책 수단은 일반적으로 비임금소득계층의 소득이 임금 및 봉급 추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간접적 조치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모든 기업 및 동종 업계 내의 다른 사업체의 전반적인 가격구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효과적인 물가 당국의 설립.
- 기존에 있는 자본 취득세의 효과적 적용을 통해 투기업자 및 탈세자를 포착한다면 이들의 세후소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투기행위에 대한 디스인센티브를 제공으로 세전소득의 증대 또한 제한.
- 급여 및 복리후생 등 이사선임 조건을 기업 연례보고서에 공시할 것, 주주의 승인을 얻을 것, 또 기업이 가격인상 신청 시 간부직의 급여 및 복리후생과 함께 물가 당국에 의해 고려될 것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회사법 (Companies Act) 및 기타 관련법령 개정
- 금융기관법(Financial Corporations Act)의 제4조를 천명하면 현재 은행권에만 적용되던 금리규제 범위를 비은행권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연방정부의 금리규제 권한이 상당 수준 확대될 것이다. 이 같은 규제 권한은 비은행

권 기관의 과도한 이익추구 방지에 활용될 것이다. 또한 노동당 정부가 프레이저 정부의 통화정책의 대표적 특징인 엄격한 금융정책을 거부함에 따라 금리는 하향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과잉진료, 부당한 고가 치료법의 사용, 법적 진료비 비준수 등으로 환자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하는 의사들의 능력을 지양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 의료보험체계 수립.
- 주정부의 협력: 연방정부 관할사항을 제외하면 주정부는 헌법에 부여하는 무제한의 물가조절권을 갖는다. 또한 대기업 부문의 중요 분야에 의해 부과되는 가격을 규제하는 데 있어 주정부의 지원이 요청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간접적 조치들이 미흡한 것으로 입증되고, 노동조합(Trade Union Movement)과의 합의가 있다면, 균형적·보편적 비임금소득 규제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헌법 개정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VII. 과세 및 정부지출

노동당 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산층·저소득층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득세율(income tax scale) 재편을 단행할 것이다.

물가소득정책 실효 최대화를 위해 정부는 노조운동과 연대하여 매년 조세 규모 재검토를 실시해 조세부담의 인플레이 상승으

로 인한 자동 상승을 막을 것이다.

합의된 바,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합의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조세연동제(tax indexation)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조세회피 산업을 적발 및 처벌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새로이 채택할 것이다.

- 파렴치한 조세회피 기도에 대한 소급법 적용
- 조세 당국에 충분한 자원 제공 및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 조세회피 및 탈세를 통한 중대 세법사범에 대한 조세 당국의 최고 처벌
- 초국적기업(TNC)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관련 법 조항 수정,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기업의 가격책정 방침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호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초국적기업 행동강령을 마련
- 프레이저 정부에 의해 용인되었거나, 법적 처벌 기준이 미약했던 기타 조세회피 근절
-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세무사(tax agents) 등록 취소
- 투기업자 및 조세회피자들에 대한 기존의 자본이득세 효과적 적용
- 호주 국내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합당량의 납세를 보장하기 위해 법인세 개혁 예정. 법인세 취약점 제거, 전반적 양허로서의 투자공제(investment allowance) 폐지, 투자광산업계의 과대 이익에 대한 자원임대세 도입
- 소급성과 인플레이션 조장 효과를 고려하여 간접과세의 상대적

빈도수를 낮추어 가도록 노력

-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의해 정부가 판단하기에 전반적 세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행에 앞서 노동계와 사전협의
- 지역사회서비스 또는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자원의 재분배는 적절한 경우 특정 과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의
-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임금 정의 보장, 저소득 생활자에 대한 세금 인하, 사회보장 혜택 증대, 사회적 임금에 대한 기타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한 빈곤 타파를 목표로 설정
- 사회적 임금과 관련, 시급히 요구되는 개선사항은 노동당 정책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필수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정부지출 확대 가능 폭은 정부가 비인플레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고, 그러한 성장 여부는 소득 및 물가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행되는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VIII. 지원정책

성공적인 소득 및 물가정책의 개발 및 시행은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의 지원적 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협약 당사자는 인식하고 있다. 양측은 다른 분야에서 정책

을 개발하였다. 양측은 각각 상대측의 모든 특정 정책에 결부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책 취지 및 시행상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합의를 도출했다.

다수의 정책분야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었고, 다음 분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 1) 노사관계법
- 2) 산업발전 및 기술변화
- 3) 이민
- 4) 사회보장
- 5) 산업보건 및 안전
- 6) 교육
- 7) 보건
- 8) 호주 정부의 고용

IX. 노사관계

ALP와 ACTU는 산업관계 정책은 노동자, 사용자, 및 일반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산업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 합의한다. 이 목표의 단기 실현을 위해, 새로이 선출된 ALP 정부가 일련의 구체적인 정책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이 합의되었다.

ALP와 ACTU는 다음의 정책 우선순위에 동의한다.

- 정부는 합리적이고 대립 지양성의 노사관계 접근법을 채택하고 고용주들에게도 채택을 권장하는 등 보다 나은 노사

관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합의에 의한, 그리고 입법상 또는 공통법상의 형사처벌에 의존하지 않는 노사분쟁의 해결을 권장할 것이다.

- 정부는 ACTU 및 사용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중재법 및 규제(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and Regulation)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연방정부의 노사관련 입법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통해 당 법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검토사항 가운데 노조 내부 문제에 관련된 법 개혁이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될 것이고, 이는 노조가 효과적·효율적·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담보하기 위함이다.
- 정부는 기술변화 도입 제안에 관해 노조를 통하여 사용자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피고용자의 권리 확립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정리해고 상황 발생시 사용자측이 노조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등 노동자를 위한 정리해고 공정성 확립 또한 지원할 것이다.
- 노동조합간 통합을 금지한 제한적인 법은 개혁되어야 한다.
- 기존의 노사관계국(Industrial Relations Bureau)은 폐지하고, 독립적인 조정 감사관제(Arbitration Inspectorate)가 재 도입되어야 한다.
- 정부는 각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 분야에 보다 나은 노사관계 환경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 첫번째 수순으로, 노동당 정부는 ALP와 ACTU의 호주 정부의 공무원 고용 문제에 대한 정책지침에 의거하는 행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노동조합운동(Union Movement)과 협의할 것이다.

정부는 노사관계 관련 입법을 새로이 도입하기 전에 사용자 및 ACTU를 통한 노조운동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칠 것이다.

X. 산업발전

실업률이 높은데다가 계속 상승하는 현 시기에, 호주 산업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직시하려 한다면 산업개발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ALP와 ACTU는 호주 산업계가 일련의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인한다.

변화의 과정은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공히 지극히 어렵다. 이런 어려움은 전반적인 경제관리 정책의 부적절함과 특정 정책의 졸속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다.

산업발전을 경제운영에 대한 물가소득 접근법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소득 및 물가정책의 장기적 실효성 극대화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 점은 특히 합의에 의해 완전고용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산업구조조정요의 요구와 완전고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삼 강조되고 있다.

ACTU와 ALP는 이하 요약 사항을 포함한 일련의 주요 특징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산업발전 정책 시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 경제정책의 최고 목표는 완전고용 달성이다. 이를 위해 산업발전책은 거시경제정책과 통합되어야 한다.
- 경제의 현재 상황과 향후 예측으로 미루어 시장요소만을 이용해 완전고용을 달성코자 하는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 동의가 이루어졌다.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종합적이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받는 개입정책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실업률 감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요구된다.
- 개입주의 정책에 요구되는 기본 요소는 계획 메커니즘이다. 이 과정은 넓은 의미로서의 사회협약의 제도를 포함하며, 이는 계획체제로의 성공적 경제 전환에 있어 조율적이고도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협약 양 당사자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조업 부문의 지역별·산업별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이는 광산업, 에너지, 농업 분야에서의 생산 규모 및 가치 변동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해 줄 것이다.
- 산업정책은 다른 산업부문과의 연계를 확대시켜 줄 수 있는 성장성 있는 제조업부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산업정책은 민간 및 공공부문, 즉 산업 전반의 통합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지속적 사양산업이나 취약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의 개발에도 착수해야 한다.
- 산업정책의 중요한 취지는 증가한 제조업 활동을 자본재(capital goods)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재화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intermediate goods)까지도 포함하는 생산재

(producer goods) 제조 분야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 사회협회는 산업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 요소이며, 산업·기업·작업장 단위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 고실업 상황에서 보호 수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몰지각한 것이다.
- 호주의 국제경쟁력 평가에 있어, 다음 사항들에 대한 관심을 점차 제고해야 한다.
 - 운송정책 개선
 - 수출시장 개발관련 행정 개선
 - 투자합작회사
 - 체계적 마케팅 계획에 대한 관심 제고
 - 실업자 및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모두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생산을 산출하는 데 수반되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 호주 자본기반 개선 필수.
 - 투자 목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지원확대 필요성
 - 고용훈련 및 재훈련 정책은 필수 인력자원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국가 경제계획 프로세스로 통합될 예정
 - 프레이저 정부에서 산업정책을 위해 채택했던 혼돈적·졸속적·파괴적이었던 시장원리에 대한 절대적 의존정책과는 차별적으로, 노동당 정부와 노동계는 분명한 정책 우선순위, 구체적 목표, 변화에 대한 유연한 조정을 바탕으로 장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상기 목적, 우선순위, 목표, 조정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기획 및 산업·교역 관련 부처들간의 충분한 조율을 실시하기로 동의되었다.

위의 사항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인 핵심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제고하기로 합의가 도출되었고, 정책 이슈들은 ACTU의 경제정책과 ALP 정책들(산업정책, 고용정책, 외국인 투자,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중소기업, 여행)에 반영되어 있다.

정책의 구체적 구성 요소는 정책의 기본 취지와 일맥상통한다는 인식하에, 1983년도 산업정책의 기본적인 정책 우선사항을 열거하고자 한다.

◆ **계획 프로세스**

ALP와 ACTU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 방안을 결정하는 계획체제 확립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 소득 및 물가구조의 역할이 정의된 국가경제계획 메커니즘
- 제조업 협의회(Australian Manufacturing Council) 개혁 및 산업단위 부문별 협의회를 국가경제계획체제로 완전 통합
- 산별 노사정 협의제도의 도입 및 장기적 추진
- 경제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사정 협의를 기반으로 한 기업단위 협의를 통해 다른 기구 보완
- 폭 넓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우선사항을 경제계획 메커니즘에 반영할 것.

◆ **보호정책**

ACTU와 ALP는 호주 산업계가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면

서, 산업정책은 변화를 촉진하면서도 그에 수반하는 문제는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의 관점을 바탕으로 양측은 다음에 동의하였다.

- 현 경제상황 및 향후 전망이나 경상수지 압박을 이유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 보호정책을 축소할 수 없다.
- 향후에 보호정책을 변경하려면 노조와 기업이 핵심 역할을 하는 계획 메커니즘 내에서 결정될 것이다.
- 보호정책을 검토할 때, 보호 수준의 유지 또는 확대에 의한 발생 수익의 분배에 대해 기업측이 해명 또는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 목표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 무역 경쟁국의 고도로 정교화된 무형의 비관세 장벽 이용 사례 증가와 그로 인해 유출되는 편익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 일시적 경쟁력 상실로 초래되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임시지원국(Temporary Assistance Authority)의 업무 절차 및 덤핑 수사를 간소화해야 한다.

◆ 변화에 대한 순응

협약 당사자들은 장기적인 성장 극대화를 위해 호주 산업계에 변화가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다. 변화에 대응하고 완전고용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변화 촉진 정책들이 계획 메커니즘을 통해 일반 경제정책에 통합된다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 단기적 목표와 관련된 이니셔티브

- 노동시장 비상 상황은 고용창출 및 고용을 위한 자금 마련이 근본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 경제정책은 직·간접적 채널에 의한 고용창출을 통해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주택경기부양 자금 등 산업 경기 활성화 자금 지원
 - 공정한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도입
 - 정부 내 산업자금 관련 기구들의 기금 활용도 제고를 통해 산업기금에 대한 접근 개선

IAC⁴⁾의 활동 및 역할이 검토될 것이다. 실업의 사회적 여파가 TOR에 포함될 수 있도록 IAC가 보장할 필요성도 포함될 것이다.

변화의 부정적 효과 축소에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직업훈련 및 재훈련 관련 종합정책이 도입될 것이다.

조정 프로세스와 계획 메커니즘은 초국적 기업이 공개한 완전하고 종합적인 정보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초국적 기업의 사실상의 무절제한 행위들은 다음에 열거한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규제될 것이다.

- 외국인투자검토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 ILO⁵⁾와 OECD가 채택한 것과 유사한 초국적 기업을 위한

4) 산업지원위원회(Industry Assistance Commission): 외국 경쟁에 대한 호주 산업의 보호 수위를 사정하는 기능.

5)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정부, 기업, 노동계 대표들로 구성된 노동관련 최고 국제기구.

국제행동강령 채택

- 이 협약에 채택된 노사관계법에 제시된 고용보호 및 협의 제도
-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호주 산업체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강력 인센티브제 폐지
- 국세청(Tax Office)이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과세협정의 총 활용을 통한 이전가격조작⁶⁾ 행위의 철저한 단속
- 국세청의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 확대
-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가담 행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XI. 이 민

ALP와 ACTU는 이주정책의 목표 및 우선사항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였다. ALP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될 정책 추진작업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음은 양측이 서명한 일반적 정책 지침들이다.

- 인구 및 이민관련 정책은 호주 사회의 발전 및 성장에 있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6) 기업이 자사 차원의 국경간 거래를 위해 수출입 상품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 미래의 국가안위는 다문화 국가로서의 호주가 갖는 문화·사회·경제적 시사점을 수용하는 것에 있다.
- 이민은 인력자원계획이나 고용정책의 대체물이 아니다.
- 경제·사회·인도적 요소들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호주로 유입되는 인구 수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우선순위에 관한 합의

동의된 바, 현 경제환경, 노동시장 상황, 사회적 요인들 간에 균형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균형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우선적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 이주 기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족재결합(family reunion)과 난민유입(refugee intake)이 최고 우선 고려사항이다.
- 정부 출범 즉시 숙련노동자 유입, 고용지명제(Employment Nomination Scheme),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제(Working Holiday Visa Scheme)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다.

XII. 사회보장

사회보장 지출은 현재 또는 향후에 노동조합원들 모두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칠 요소의 하나인 사회적 임금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에 대해 ALP와 ACTU는 동의한다. 사회보장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실질 생활수준의 유지 및 최대 가능 수준까지 개선

- 보장 범위 격차 및 부조리 시정을 위한 지원 확대
- 최대 취약계층의 상대적 지위 개선 노력을 통한 사회평등 확대
- 퇴직연금(superannuation benefits)과 같은 기업복지 제공사의 부조리 개선

ALP와 ACTU는 다음의 우선사항에 대해 동의한다.

- 정책 피해자를 처벌하는 프레이저 정부 정책에 의해 극심한 차별을 받았던 실업수당 수혜자들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
- 자동물가연동제 실시 및 확대: 현재 물가에 연동되어 있지 않은 급여를 포함시키고,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다 신속히 반영
- 연금 및 수당의 상대적 가치 회복: 지역사회 소득(community incomes) 변동과 연계하여 평균 남성 근로자 기준 기본 25%선까지 회복 목표
- 저소득 노동자 가계 지위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 자녀양육 지원 개선, 가계소득 지원금 현실화, 임대료 보조금
- 특히 노령층을 위한 기존의 의료 및 복지서비스 합리화 및 지역별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제도적 모델의 개발

◆ 추가 정책 개발과제

ALP와 ACTU는 기존 사회복지제도 개선하는 있어 내재적 한계 및 연례 예산책정 과정 및 보수적 비용 삭감 등의 변동 요소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새로운 대안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국가퇴직연금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생계보장에 기여도가 있는 구체적인 기금 조성을 정책개발에 포함시키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XIII. 산업보건 및 안전

ALP와 ACTU는 호주 근로환경의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개선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 사측과 노조측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바이다.

양측은 개선 방법론에 대해 완전한 동의를 이루었다.

ALP와 ACTU의 산업보건 및 안전 정책은 근로환경은 근로자 당사자들의 요구에 맞게 조성되고 개조되어야 하며, 사측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스트레스 없는 근로환경을 제공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단위 노사 최고 협의체, 지역단위 근로자 건강안전위원회 차원의 노동계 및 노동계가 임명한 대표와 경영자간 회의에서 작업장 내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정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다.

상기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실천 수단은 다음과 같다.

- 고용 및 노사관계부 산하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산업보건안전위원회(National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NOHSC) 설립을 통해 근로보건 및 안전에 관한 국가적 기준을 정하는 작업에 사측과 노측을 참여

- NOHSC 의결사항을 시행할 국가산업보건안전사무국(National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ffice) 설치를 통해 산업 안전 기준 및 법령을 자치구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 화학물질 국가 라이선스제 도입: NOHSC가 심사 원칙 및 기준 수립, 환경부 산하에 환경오염물질위원회(Environmental Contaminants Authority: ECA), 보건부 산하에 환경근로보건연구소(Institute of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NIEOH)를 설치하여 심사

두 기구는 연방정부기관의 성격을 갖게 되며,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각 주정부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적

협약 당사자 양측은 연방정부고용 대신 노동계 및 노조가 임명한 보건안전 대표가 작업장 내 위험 요소 모니터 및 관리에 사측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 수립에 노동당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연방정부고용을 대신하는 산업보건안전 노사 공동위원회 설치를 포함한다. 위원회 내에서 보건안전 노동계 대표들은 다음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합당한 시간에 수시로 작업장을 사찰한다
- 사측이나 사무국으로부터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 사고 발생 이후 안전관련 분쟁이나 내부 조사시 근로자를 대변한다
- 작업장 사찰시 감사관과 동행하며 감사관이 보고서를 작성

- 할 경우 사본을 받을 수 있다
- 감사관 중재 진행 중 안전과 건강에 해로운 조건에서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작업장 내 모든 변화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규정 위반과 관련해 사무국이 조치하지 못할 경우 사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보건안전 근로자 대표는 임무 수행을 위한 유급휴가를 인정받으며, 소속 노조와/나 TUTA⁷⁾가 제공하는 관련 훈련 프로그램 또는 소속 노조가 승인한 기타 적합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측이 보건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XIV. 교 육

소득 및 물가협약이 교육기회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교육기회 및 현실적 수준의 자금지원 유지 및 가능한 경우 확대한다는 목적에 합의하였다.

상기 목적을 반영하여, ALP와 ACTU는 1982년 11월 발표된 교육계획(Educational Plan)에 ALP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며, 양측의 정책과 일관성이 있는 일단의 구체적 실천약속사항에 대해 동의한다.

7) Trade Union Training Authority: 호주 노동교육위원회.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정관련 우선순위

- 학교별 학생 유지율(retention rate) 제고
- 학업 성취도가 낮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신설
- 자본 (건물) 설비 보완 및 정기지원금 보충
- 고등직업학교 교육 참여도 제고
- 기술변화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호주의 교육관련 연구 노력 제고
- 모든 아동에게 열려 있는 수준 높은 공교육 시스템 제공 · 유지에 대한 정부의 1차적 의무 유지
- 필요에 따라 비-공립학교 지원금 지원
- 교육 및 훈련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 보장

<역점사항>

- 노동시장에서 취약함을 겪고 있는 청년 및 노령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및 재훈련 제공
- 성인 대상 이동교육 상설 서비스 체계 수립
- 여성, 농민, 원주민에 대한 평등기회 정책 및 시행에 대한 TAFE⁸⁾ 협의회의 보고서 및 권고안 조기 확보
- 모든 호주 청소년을 위한 일, 훈련, 교육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는 청소년정책 개발

8)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직업전문대학교육.

◆ 비재정관련 우선 합의사항

- 학교 및 직업전문교육을 위한 독립 자문기관의 관리
- 3년 단위 기금 조성 및 보충비용 소급 산정
- 정부 설립 기관에서의 수업료 징수 반대

◆ 향후 정책개발 과제

협약 당사자는 ALP 정부는 다음 분야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 청소년정책
- 이동 및 다문화 교육
- 원주민 교육
- TAFE 기금 수준
- 학교위원회 개혁
-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문제

물가소득정책의 취지에 맞추어, 협약 당사자는 노동당 정부의 3개년 교육정책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을 실시하는 데 동의하였다.

XV. 보 건

ALP와 ACTU는 단순하고 보편적이며 평등하게 지원되는 국

가의료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양측은 의료체계 개선방법론에 대해 전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보험 프로그램

- 단일한 공공 보험기금으로 모든 의료비와 공립병원 기본 설비 및 서비스 적용 지원
- 소득확인 없이 공립병원 이용
- 소득확인 없이 지역의료서비스 이용
- 실직자 대상 의약품 무상 제공
- 규칙적인 투약이 필요한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양허적 의약품
- 재원조달 방법
- 과세소득의 1% 균등 징수. 단, 의료보험카드상의 연금 대상자, 실업자, 저소득 생활자는 적용 면제
- 의료체계상의 기존 보조금 배분에 대한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
- 개인의료보험 기금을 통해 공립병원에서 개인적인 치료 또는 사설병원에서의 입원을 위한 추가적 혜택 희망자나 추가 의료보험 가입 희망자 지원

ALP와 ACTU는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다수의 임금소득자들의 건강보험 관련 비용을 대폭 감소시키고, 소비자물가지수(CPI)를 2% 감소시켜 노동당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인식한다.

◆ 지역의료센터 확대

통합의료서비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피임기술 및 관련 상담서비스 개발을 위해 주 단위 지역보건지원금(Block Health Grants to States for Community Health)의 최소 분담액 제공 보장. 이 서비스들은 수요가 가장 높은 곳에 할당될 것이다.

2천만 달러 긴급 추가지원을 통해 지역보건기금을 1975년도 기준 실질수준으로 회복.

◆ 양로 프로그램

매년 3천5백만 달러씩 예산이 증액되는 지역복지 프로그램의 단계적 도입. 3년 내에 연방정부 노인부양비 지원액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

이 기금은 기관 요양 및 준의료서비스(발치료, 물리치료, 가정도우미, 홈 에이드, 가정유지보수, 식사배달) 제공 등에 쓰일 것이다.

기존에 할당된 지역보건기금 외에 지원된 특별보조금 1천만 달러로 지역건강센터 내에 양로요양시설 건립. 이 기금은 부분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치과 및 안과서비스 개발에 사용될 것이다.

- 노인거주 주택 공급원으로서 호스텔 부문의 성장을 유도
- 주요 인종 공동체를 위한 분리 요양시설을 포함, 간호 요양 시설 부문의 적절한 전문화 유도
- 특정 요양시설에서 재활서비스, 단기휴식간호 병상 제공 등 필수적인 지역단위 서비스 증진

XVI. 호주 정부의 고용

정부 자체 직원들과 관련해 ALP 정부는 ACTU와 관련 산업 조직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우호적인 노사관계 회복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한 첫 단계 조치로, ALP와 ACTU 정책 시행 프로그램 결정을 위한 조기 회의가 개최될 것이다.

◆ 관련 사안들

- 프레이저 정부가 철회했던 중재권 및 보호권 복권을 위한 입법 프로그램
- 합리적이고 업무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직원 충원 및 재원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 적절한 작업장 및 직원들에게 영향적인 사안에 대한 노조와의 협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호주 정부의 고용부문은 다른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과 비교할 때 임금수준 및 고용조건 관련 비용 책정에 있어서 선도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산업조직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얻은 자문 및 지침을 통해 해당 조건들이 주 단위 관련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과 동등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XVII. 이행기제

소득 및 물가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 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상세한 경제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노측과 사측 대표가 참여하는 경제계획자문협의회(Economic Planning Advisory Council)를 설립할 것이다. 이 기구는 계획 수립 절차, 경제발전 전망, 정부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것이다. 이 협의체의 노동계측 대표는 의견 및 정보의 지속적인 쌍방향 교류 및 공동체 내 다른 주요 그룹의 견해를 협약 당사자들에게 인지도시킬 것을 약속할 것이다.

대표성을 갖는 노사정 기구를 설립하여 소득 및 물가정책 권고 및 정책 시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모니터 및 토론 책임을 갖게 하고, 경제계획자문협의회(Economic Planning Advisory Council)와 공조하도록 할 것이다.

정보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협약 당사자는 경제 및 산업관계 관련 정보는 정확성, 현재성,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사기업 및 공기업에 대해서는 자사의 재정상태, 미래의 수익성 평가 및 투자·고용 계획에 대한 상세 정보를 직원 및 관련 노조에 제공할 것이 권장된다. 정부측에서는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및 공표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고, 정보의 신뢰도 및 현재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XVIII. 결 론

협약 양 당사자에게 부여된 임무의 전부는 이 문서의 첫 단락에 상세하게 서술되었다.

소득 및 물가에 근거한 정책의 역할을 이해하는 한편으로, 본 협약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이곳에 서술된 새로운 정책 접근법에 의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협약 당사자의 강력한 견해를 피력한다.

경제·사회 개혁의 속도는 점진적일 것이나, 지속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가시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사회적 장기 목표는 실현될 수 있고, 또 실현될 것이다.

제5장

독일의 사회협약

◆ 배 경: 일자리, 직업훈련 및 경쟁력 연대

1990년대 초반까지 독일 자본주의는 높은 수준의 복지, 낮은 수준의 사회적 불평등, 강력한 경제적 실적 등이 결합되어 일본과 더불어 성공적인 모델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말이 되면 독일 모델이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정치권과 학계에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독일 경제의 위기라는 개념은 지속적으로 높은 대량실업을 고려할 때 더욱 뚜렷해졌다. 1990년 공식적으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200만명 미만에서 1999년에는 4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실업자수의 엄청난 증가는 부분적으로 독일통일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1999년 서독의 실업률은 9.9%였으나 동독 실업률은 19%에 달했다. 그러나 독일의 높은 실업률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독일 경제가 낮은 성장을 기록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독일 모델의 위기에 대한 논쟁과 함께 독일 자본주의의 기초적인 제도들이 새롭게 세계적으로 통합된 경제질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공격을 받아 왔다. 특히 독일의 노동시장제도는 노동비용을 높이고 경직적인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받아 왔다. 이에 대해서 독일의 단위노동비용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유럽에서 가장 빨리 저하되어 왔으며 수출증가율은 유럽 평균 이상이었던다는 점에서 경쟁력 약화가 낮은 경제성장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문제는 국내 수요의 감소라는 것이다.

◆ 추진 경과

이런 가운데 독일금속노조의 의인 클라우스 츠비켈이 1995년 임금인상률을 불가인상률로 낮추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장기실업자의 고용, 정리해고 3년간 유보, 실업수당과 복지혜택 감축 중단을 요구하는 일자리연대를 제안했다.

츠비켈의 제안은 점차 정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들을 불러모아 실업률 감소를 목표로 전국고용협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으로 확대되어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1996년 기민당-자유당 연립정부는 수상의 주도로 지도적 경제단체 대표들과 노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와 생산기지 보호를 위한 일자리연대를 통해 실업을 줄이고 일자리창출 투자를 위한 기본 조건을 개선하는 여러 정책들을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했다. 그러나 단체교섭과 정치적 영역에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독일의 일자리, 직업훈련과 경쟁력 연대의 고위급 회의

회의일자	회의의 의제
1998. 12. 7	간접 노동비용 감축과 노동의 유연화
1999. 2. 25	특별위원회의 설립
1999. 7.6.	법인세제, 조기퇴직, 연금제도, 동독의 노동시장정책, 직업훈련의 개혁과 연장근로시간의 단축
1999.12.12.	직업훈련,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특별프로그램,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프로젝트(마인츠와 자아르 모델)
2000. 1. 9.	조기퇴직과 단체교섭
2000. 7.10.	직업훈련, 연장근로의 감축, 노동시간계정과 노동의 유연화
2001. 3. 4.	기업수준의 추가훈련, 고령노동자들의 고용,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금
2002. 1.	임금정책에 관한 갈등
2003. 3. 3.	경제개혁방안에 관한 합의에 실패

그리하여 1998년 슈뢰더가 이끄는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일자리 연대는 다시 시도되었다. 고위급 회담의 결과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다음 참조.

◆ 실패 요인

사민당 내부에서도 독일 경제의 개혁방안을 놓고 노동시장, 사회보장, 조세 등의 미시적 개혁을 강조하는 슈뢰더 중심의 신중앙파와 거시경제정책, 내부수요, 새로운 투자의 조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체제 구축을 주장하는 오스카 라퐁텐 중심의 신케인즈파 간의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슈뢰더의 신중앙파에게 신케인즈파가 권력투쟁에서 밀려서 신중앙파가 독일경제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독일 경제, 특히 독일 자본주의를 지탱해 왔던 노동시장제도를 비롯한 경제사회제도의 개혁,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법인세 감축 등은 경쟁적 코포라티즘(competitive corporatism)으로 불렸는데, 전통적 코포라티즘의 임금억제와 정치적 교환(political exchange)이라는 내용과는 달리 기존의 권력관계를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다. 독일 사민당이 이러한 개혁을 사회적 타협과 합의를 통하여 시도한 것이 일자리연대였다.

이러한 일자리연대는 기존 노사간의 권력관계를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임금억제, 조세정책,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사용자에게 부의 재분배를 하면서 일자리를 만

드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 노조들의 반발을 샀다. 2002년부터 임금정책에 대한 노사, 노정 간의 갈등으로 기존의 합의를 의미있는 개혁으로 구체화시킬 수 없었다. 2003년 초 독일의 실업자가 427만명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실업자 축소가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사용자단체가 실업청년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는 중간 수준의 임금인상과 특정 상황에서 단체협약의 미준수를 포함하는 '개방조항'을 두면서, 사회보장부담금 축소, 추가적 세금인상 금지, 정리해고시 노동자 보호 축소 등을 요구하자, 노조가 이를 거부하여 일자리연대는 지속될 수 없었다. 그러자 독일에서는 야당과 사용자단체 쪽에서 사민당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과 개혁의지를 문제삼기 시작했고 노동조합의 권력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또한 개혁을 추진하는 사민당 정부와 노조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처럼 일자리연대를 통한 독일 경제 개혁, 특히 노동시장제도 등의 개혁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이들 개혁의 과제는 독일 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배규식 연구위원)

1998년 12월 7일자 고위급 회담 결과 「일자리, 직업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¹⁾에 관한 공동 성명서

연방정부, 사용자단체 대표 및 노조 대표들은 오늘 게하르트 쉬뢰더 연방총리 주재하의 최고위급 회의에서 일자리연대를 통해 실업 축소를 목표로 노력해 나가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로 합의했다.

1.

「일자리, 직업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에 참여한 각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들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높은 실업의 극복은 21세기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와 사회에 대한 가장 커다란 도전이다.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높은 고용은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라, 문제에 대응하여 경제정책적 조치들을 결합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노조 및 사용자단체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참여 당사자들간

1) Bündnis für Arbeit, Ausbildung und Wettbewerbsfähigkeit: 직역하면 “일자리, 직업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 이하 일자리연대.

의 긴밀한 조정이 시급하다. 「일자리, 직업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는 장기적인 바탕 위에서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상이한 이해의 조정과 다양한 견해의 조정을 통해서 구축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고용 증가와 경제적 역동성 개선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포괄적인 개혁이 필수불가결하다. 지금 벌써 첫 번째 단계의 효과적인 대책이 가능하다.

국가, 사용자단체 및 노조의 효과적인 기여와 임금교섭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 고용 개선이 눈에 보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임금교섭 당사자나 정치 분야의 연대에 참여한 당사자가 자기 책임을 다할 때 이 연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연대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모두에게 자명하다. 임금교섭의 자율성은 침해되지 않는다.

이원적 체계 아래에서 직업교육은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일을 원하고 능력이 있는 독일의 모든 청소년들은 직업교육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 참여 당사자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공동 활동에 있어서 연방, 주, 자치단체, 노조, 사용자단체, 경영자 및 직장평의회(betriebsrat) 등을 지원한다. 일자리연대는 이에 상응하는 기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장려한다.

2.

공동선언에 따라서 「일자리, 직업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에 동의하고 당사자들은 특히 다음 목적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

- 비임금 노동비용의 지속적 감축과 사회보장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

- 고용촉진적 일자리 분배와 유연적 노동시간제(연장근로의 단축, 노동시간계정의 사용, 파트타임 노동의 촉진)
- 특히 중소기업의 세금 감축을 포함하여 2000년 1월까지 법인세 개혁
- 기업들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의 향상
- 현행 법정 정년 범위 내에서의 법률,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등을 통해 조기퇴직의 활용을 위한 가능성 제고
- 고용 증대를 지원하는 단체교섭 정책
- 벤처자본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 개선
-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이익분배제의 개선
- 고용, 혁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정 주제에 대한 노사정 삼자 대화기구의 설립
- 기업 설립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장애의 지속적인 제거
- 새로운 장비의 시운전·투입을 통해 저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고용 영역의 개발
- 장기적 실업과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향상훈련, 재교육기회 부여 등과 같은 노동시장정책의 확장

3.

「일자리, 직업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첫 단계로서 다음 주제들을 다룰 연구자 혹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8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했다.

- 직업훈련과 지속적 훈련(훈련장관 에텔가드 불만이 의장)
- 조세정책(재무장관 오스카 라퐁텐이 의장)
- 연금제도의 개혁(노동부 장관 발터 리스트가 의장)
- 조기퇴직제(노동부 장관 발터 리스트가 의장)

- 노동시간 정책(노동부 장관 발터 리스트가 의장)
- 보건과 의료보험의 개혁(의료 장관 안드레아 피셔가 의장)
- 동독의 경제개발(볼프 슈바니츠가 의장)
- 벤치마킹(총리실 장관 보도 훔바흐가 의장)

4.

연방정부, 사용자 및 노조는 오늘 수상이 주재하는 고위급 대화를 「일자리, 직업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 틀 내에서 계속적인 대화를 위한 좋은 서곡으로 평가했다. 벤치마킹에 관한 실무그룹은 모든 참가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동의 사회적 경제적 데이터와 분석을 해야 한다. 모든 작업그룹들은 그들의 작업을 1999년 1월 개시할 것이며 최고위급 회담 대표들과 핵심 그룹의 다음 모임은 1999년 2월 25일 개최된다.

1998년 12월 일자리 연대를 위한 첫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대표들

정부측	사용자단체나 경영단체	노동조합
게하르트 슈뢰더 (수상)	디터 훈트 (독일 사용자단체, BDA)	디터 슐테 (독일노총, DGB)
오스카 라퐁텐 (재무장관)	한스올라프 헨켈 (독일사업자협회, BDI)	클라우스 츠비켈 (독일금속노조)
베르너물러 (경제장관)	한스 피터슈틸 (독일상공회의소)	후버투스 슈몰트 (독일광산, 화학, 에너지노조)
발터 리스트 (노동장관)	디터 필립 (독일수공업자중앙조직)	헤르베르트 마이 (독일공공서비스, 운수노조)
안드레아 피셔 (보건장관)		롤란드 이센 (독일화이트칼라노조, DAG)
보도 훔바흐 (총리실 장관)		

1999년 2월 25일, 일자리연대

제2차 고위급 회담

- 1999년 3월 9일 일자리연대 실무그룹 회의에 대한
연방정부 공보처 성명서(공동 성명서 미발표)

제2차 고위급 회담의 주제는 ‘연방 일자리 연대와 주 일자리 연대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였다. 이를 위해 1999년 3월 9일 주 총리실(시정부 포함) 수반과 경제계 및 노동계 대표와 함께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연방과 주가 실업퇴치와 직업훈련 자리 공급상황 개선을 위해 동일한 방향으로 역점을 두어 정책을 펴나기로 결정하였다.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청년을 위한 일자리 십만 개 창출” 특별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정책이 진전을 보고 있다. 많은 주들이 해당 주 일자리연대에서 청년실업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 연방의 특별 프로그램은 이와 관련하여 주들이 뒤따를 수 있는 하나의 모범적 이니셔티브가 되고 있다.

회담 참가자들은 일자리연대의 활동이 다양한 국가 부문에서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 향후 보다 긴밀한 정보 교환을 하기로 약속했다.

공동 성명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1999년 7월 6일, 일자리연대 제3차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서

I.

일자리연대는 금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연방총리를 의장으로 제3차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자리연대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개최된 회담을 중간 결산하고 조세정책, 직업훈련, 연금 및 조기퇴직, 노동시간 및 동독 지역 재건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고 앞으로 논의할 노동정책에 합의하였다.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및 연방정부의 대표들, 즉 게르하르트 슈뢰더 연방총리, 한스 아이헬 장관, 베르너 뮐러 장관, 발터 리에스터 장관, 안드레아 리퍼 장관, 에델가르트 불만 장관, 프랑크-발터 슈타인 마이어 차관, 한스-올라프 헨켈 독일전경련 회장, 디터 훈트 독일경영자총연합회, 디터 필립 독일수공업자중앙회 회장, 한스 페터 슈틸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디터 슐테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의장, 롤란트 잇센 독일사무직노조 의장, 클라우스 츠비켈 금속 산별노조(IG Metall) 의장, 후베르투스 슈몰트 광업·화학·에너지 산별노조(IG BCE) 의장, 헤르베르트 마이 공공직·운수·교통노조 의장은 다음과 같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II. 미래 프로그램 2000

일자리연대 참여 당사자들은 지속적인 국가 재정의 안정화 정책을 중심으로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고 필수적인 예산긴축정책의 부담이 노사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올바른 정책임을 확인한다.

III. 기업세제의 개혁

일자리연대 참여 당사자들은 연방정부가 계획한 기업 세제의 개혁 구상을 그 목표 방향에 있어 환영하고, 독일에 소재한 기업들—특히 중소기업들—의 조세부담률을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며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활동과 고용 증대를 지원한다.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를 낮춘다는 계획은 투자활동을 전반적으로 촉진하고 독일의 생산입지 조건을 크게 개선하여 특히 국제적인 직접투자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한 노동시장에도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충분한 직업훈련 실습자리 확보

“능력과 의지를 갖춘 모든 청년은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일자리연대가 합의한 ‘직업훈련 합의’의 목표이다. 이 합의 내용은 9월 30일까지 노동사무소에서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등록된 지원자들에게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희망하는 직종에서 가능한 한 거주지에 가까운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99년부터 매년 10월에 노동사무소, 경제계, 노조 및 기타 해당 지역의 책임자들이 주축이 되어 노동사무소 관할 지역 및 주 노동사무소 관할 지역 차원에서 지역직업훈련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사업장 내 직업훈련 실습자리 증개를 최우선으로 다룬다. 일자리연대는 외부에 직업훈련 조직을 갖춘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단체 협약 당사자들(노사)의 제안을 지원한다.

사용자단체들은 1999년에 인구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장 직업훈련 실습자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더 나아가 최소한 10,000개의 추가적인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창출하겠다고 2월에 약속한 합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최소한 매년 인구변동에 따른 추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을 쓸 것을 다짐했다. 향후 직업훈련 실습자리 증대를 위해서는 신종 일자리 발굴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노사는 9월 말까지 연방정부에 이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제출이 없을

경우 연방정부는 시행령을 발동하여 결정을 내린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연대 참여자들은 직업훈련 및 향상훈련 실무그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미비한 청소년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단계적 실천계획이 미래의 실업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원화된 교육과정(듀얼 시스템)에서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1999년 6% 이상 늘리고 후속 연도에 지속적으로 최소한 인구변동 추이에 따른 추가 수요를 감안하여 실습자리를 늘려 갈 계획이다. 매년 3월에는 지난해의 직업훈련 실습자리에 대한 결산을 하고, 해당 연도의 예상되는 직업훈련 실습자리 수요에 대한 합의 도출 및 직업훈련 실습자리 수요 충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직업훈련회의가 개최된다. 지역회의의 결과는 연방 차원에서 일자리연대를 통해 취합된다. 이 때 직업훈련 합의를 이행하는 조치들에 대해 비판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할 경우 직업훈련 합의의 조치를 수정·보완한다.

◆ 정보통신 분야 직종의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연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추가적인 전문인력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연대는 수년에 걸쳐 IT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공약을 펴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신규 IT직종의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3년 이내에 40,000개로 증대시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독일 정보통신 분야 노동시장의 시급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2005년까지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150,000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일자리연대는 고용잠재력을 십분 활용하는 데 장애

가 되는 전반적인 교육 부문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긴 대학교육 기간 및 교육과정에서 충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V. 단체협약정책

일자리연대 참여자들은 독일경영자총연합회(BDA)와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의 공동성명에 동의하였다. 일자리연대는 독일 경총과 독일노총이 일자리연대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인식했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VII. 고령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제²⁾

일자리연대는 고용노동자 단시간 노동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책에 의견이 일치했다. 지금까지 이미 시간제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고용노동자 단시간 노동제를

2) 고령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제(Altersteilzeit)는 한편으로 나이 든 노동자에게 퇴직하기 전 시간제 노동을 함으로써 퇴직을 준비하는 기간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 실업자나(해당 사업장에서 직업훈련은 받았으나 정규직으로 채용될 보장이 없는) 직업훈련생에게 고용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일자리연대는 고령노동자 단시간 노동 장려금 지급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고령노동자 단시간 근로제의 도입으로 빈 일자리에 신규인력의 충원을 쉽게 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앞으로는 종업원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고령노동자의 단시간 노동제 도입으로 비어 있는 일자리에 대한 신규인력 충원 증명서를³⁾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와 동시에 고령노동자 단시간 노동제로 발생하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 대신 직업훈련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규모가 큰 기업체의 경우 고령 노동자 단시간 노동제 도입으로 빈 일자리에 대해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경우 이를 위한 사업장 내 일자리 이동증명서 제출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연방정부는 고령노동자 단시간 노동제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골자로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방노동청에서 노동행정을 통해 합의사항에 준하여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VII. 연금/조기퇴직

연방정부의 연금구조 개혁의 중점사항은 안정적인 연금요율의

-
- 3) 사업장 내 일자리 이동 증명서(Umsetzungskette란 사업장 내에서 한 노동자가 고령노동자 단시간 노동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 이로써 발생하는 빈 일자리를 사업장 내의 다른 노동자가 대신 맡아 하고 있다는 증명서로, 이를 통해 해당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충원되는 것을 입증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빈 일자리와 새로 충원된 사람의 일자리가 서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인상과 함께 적절한 노후 생활수준이 보장되도록 하고 각 개인들의 추가적인 사회보험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금개혁 및 실업보험’ 실무그룹 차원에서 연금구조 개혁을 위해 연방정부가 제시한 핵심사항이 일자리연대에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연금개혁 및 실업보험 개혁’ 실무그룹과 ‘생애노동시간/조기퇴직’ 실무그룹은 생애노동으로부터 조기퇴직의 가능성(연방노동부(BMA)의 임금협약기금모델, 60세로 연금수령자가 될 경우 보험의 산술적인 급여를 상쇄하기 위한 노조측의 제안 및 사업장 내 노후보험의 제반 여건개선을 위한 사용자측의 제안)을 사업장 내 노후보험 및 개인 노후보험 확대라는 목표와, 어떻게 하면 보다 탄력적이고 적절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VIII. 동독 지역 재건

일자리연대 참여자들은 동독 지역의 재건사업에 계속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새로운 구동독 지역의 주들을 경쟁력 있는 생산입지로 발전시키는 것이 그동안 많은 산업 분야와 여러 지역에서 큰 진전을 본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발전 과정이 결코 완결된 것은 아니다.

일자리연대는 동독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가 지역 한계를 넘어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일자리연대 참여자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하였다. 이들 조치는 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들이

제공하는 컨설팅을 비롯하여 판매전시회 참가 지원과 동독 지역의 수출지향적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구체적인 판로를 개척하는데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일자리연대는 그 밖에도 동독의 새로운 주들을 위한 모든 공동 조치를 ‘우리(wir)’라는 로고하에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초에 열린 공동회의에서는 합의된 판로촉진 조치의 경과와 진척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동독 지역의 새로운 주들이 겪고 있는 특별히 어려운 노동시장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자리연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높은 수준으로 지속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원자금은 특별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문제그룹에 보다 정확하게 집중되어야 한다. 이들 조치가 향후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자격요건에 보다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와 수공업자중앙회에 앞으로의 전문인력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설명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보다 세분화된 노동시장 장려책 — 예를 들면 실업자들의 창업지원 및 실업보조금 수령자나 공공부조 수혜자들에게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의 새로운 기회 제공 등을 펼치도록 한다.

IX. 벤치마킹

일자리연대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벤치마킹의 목적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분석하여 독일에 최상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벤치마킹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벤치마킹’ 실무그룹은 여름 휴가 후 저숙련 노동자들의 취업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것은 특히 장기 실업자와 공공부조 수령자 중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일자리연대는 여러 주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다양한 시도를 환영한다.
- ‘벤치마킹 독일(Benchmarking Germany)’ 보고서를 위한 개념 수립: 이 보고서는 경제 및 생산 입지로서 독일에 대한 모든 중요한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일자리연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동의 정보 베이스가 된다.
-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
- 노동시장정책 전략에 관한 국제 비교

X. 차기 고위급 회담

일자리연대의 차기 고위급 회담은 1999년 가을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차기 회담 일정은 일자리연대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1999년 7월 6일, 직업훈련 합의서

“능력과 의지를 갖춘 모든 청년은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1999년과 그 다음 해의 계속되는 직업훈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사정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직업훈련에 대한 합의는 동독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으며, 독일 고용정책의 사업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사용자단체들은 1999년에 인구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장 직업훈련 실습자리 수요를 충족하고, 더 나아가 최소한 10,000개의 추가적인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창출하겠다고 2월에 약속한 합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는 최소한 매년 인구변동에 따른 추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일자리연대가 내놓은 ‘IT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공략’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 제안은 특히 향후 3년 내에 새로운 IT직종의 사업장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현재의 14,000개에서 40,000개로 올린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직업훈련 실습자리 증대를 위해서는 신종 직업 발굴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노사는 9월 말까지 연방정부에 이에 대

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제출이 없을 경우 연방정부는 시행령을 발동하여 결정을 내린다. 사용자단체들과 노조는 그 밖에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시 가능한 한 많은 직업훈련 실습 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일자리연대는 외부에 직업훈련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단체협약 당사자들의 제안을 지원한다.

1999년부터는 매년 10월에 연방노동청,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및 기타 해당 지역 책임자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직업훈련회의’를 노동청 관할 지역 및 주노동청 관할지역 차원에서 개최한다. 매년 9월 30일까지 노동청에 등록하였으나 아직 직업훈련 실습 자리를 받지 못한 청소년에게는 지역 여건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직종에서 최대한 주거지에서 가까운 실습자리를 제공하도록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원화된 교육과정(듀얼 시스템)⁴⁾의 직업훈련을 받도록 연결해 주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청 차원에서 사업장의 직업훈련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후속적인 구직활동을 조직한다. 청소년들 중 위에서 언급한 많은 노력과 추가적인 중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직업훈련 자리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경우 노동청은 매년 12월/1월에 서면으로 이들이 노동청에 등록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다시 이들에게 실습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노동청의 평가에 따라 아직 필요한 직업훈련 능력을

4) Dual System은 독일에 있는 독특한 직업훈련제도로 사업장의 현장 실습과 학교의 이론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이원화된 제도, 이원화체제, 복수체제, 듀얼 시스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번역하여 사용되고 있다.

갖추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직업준비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3월 각 노동청들⁵⁾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및 기타 해당 지역의 책임자들의 참여하에 ‘지역직업훈련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 지난해 직업훈련 실습자리 상황을 결산하고 평가한다.
-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직업훈련 실습자리 수요 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지역 차원에서 각 학교는 졸업생 수와 구조에 대한 자료를 직업훈련생 수요 전망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현재의 희망 직종 및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직업훈련 실습자리 수요에 대한 첫 번째 전망이 마련된다. 노동청,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및 기타 해당 지역의 책임자들은 직업훈련생 실습자리 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 이를 공동으로 실천에 옮긴다. 연방 차원에서는 지역의 전망과 직업훈련생 수요 충족을 위해 합의된 행동계획을 정리하고, 이를 일자리연대에서 평가하고 공동으로 실천에 옮겨지도록 한다. 이 때 비판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할 경우 직업훈련 합의의 조치를 수정 보완한다.

직업훈련 협력관계(대부(代父)프로그램⁶⁾)를 받아들인 기업 및 개인에게는 추가적인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위한 자금이 제공된

5)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므로 각 연방주에 노동청이 있으며, 노동청 관할구역이 180여 개로 나누어져 있다.

6) 사업주가 청소년을 직업훈련생으로 받아들여 일종의 대부(代父)처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다. 신종 직업의 직업훈련 실습자리에 우선적으로 자금이 제공된다. 이러한 직업훈련 협력관계 프로그램은 연방대통령이 후원한다. 신종 직업은 현재의 합의원칙을 토대로 신속하게 개발하여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제출된 제안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종 직업 발굴을 위해 시급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필요하다. 레저·관광, 운송·교통·물류, 보건 및 환경. 경제계와 노동계는 이에 해당되는 제안서를 올해 10월까지 제출한다. 신종 직업 창출은 경제계의 약속이기도 하며, 이러한 직종에서 추가적인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제공하여 사업장 내 직업훈련 실습자리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직 자문 및 일자리 중개 활동은 운신의 폭이 훨씬 커지고 강화된다. “직업훈련, 우리도 동참한다!”라는 일자리연대의 공동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직업훈련 직종에 대한 정보 캠페인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일자리연대는 사업장과 청소년들에게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실습자리 중개를 지원한다.

- 사용자 관련 기관들은 기업체, 사업장 및 자영업자들이 추가적인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제공할 때 이를 지원한다.
- 노조는 종업원평의회⁷⁾ 및 인사위원회⁸⁾에 정보를 제공한다.
- 노동청들은 청소년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실습자리를 중개한다.

7) 종업원 평의회(Betriebsrat)는 노조와는 별도로 각 사업장에 구성되어 있는 전체 종업원(노조 및 비노조 종업원 모두)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8) 인사위원회(Personalrat) 역시 종업원평의회와 유사한 사업장 내 기구이며, 회사의 인사 문제에 관여한다.

연방정부는 이원화된 교육과정(듀얼 시스템)의 직종에서 직업 훈련 실습자리를 1999년 6% 이상 늘리고 그 다음 해에도 지속적으로 최소한 인구변동 추이에 따른 추가 수요를 감안하여 실습자리를 늘려갈 계획이다. 일자리연대는 연방주와 각 지자체가 인구변동 추이에 따른 추가적인 직업훈련 실습자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호소한다.

일자리연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사전 자문을 통해 직업으로 인한 이동성(유동성)에 대처하도록 한다.
- 청소년 실업 해소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그룹과의 접촉을 통해 지속적인 자문 및 지원을 실시한다.
- 직업학교 교육과정에서 융통성을 강화하고 직업학교와 사업장(실습현장) 간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 직업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격요건과 훈련기간이 다양한 직업훈련 직종을 광범위하게 넓혀 기존 직업훈련 직종을 현대화하고 신종 직업을 발굴해 내야 한다. 이로써 최대한 많은 사업장들이 직업훈련에 동참할 수 있고 사업장의 직업훈련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1999년 5월 27일 직업훈련 및 향상훈련 실무그룹 보고 결과).
- 직업 준비 및 사업장 밖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업장 내 직업훈련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 이미 이수한 직업훈련 능력을 포함하여 — 보다 개선한다.

연방주들은 직업훈련 능력을 강화하여 직업훈련 상황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바를 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연방교육연구부 장관은 이러한 직업훈련 합의의 실천 경과에 대해 일 자리연대 고위급 회답에서 — 연방주의 활동을 포함하여 — 보고한다.

1999년 12월 12일, 일자리연대 제4차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서

일자리연대는 오늘 게르하르트 슈뢰더 연방총리를 의장으로 제4차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경영계, 노동조합 및 연방정부 대표자들은 제4차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I. 일자리연대의 향후 중점 분야

제1차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일자리연대는 지난 1년이 계획을 구축해 가는 과정이었으며 중요한 성공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내년에는 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구상이 실천에 옮겨질 것이다. 2000년은 지속적으로 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고용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은 신규 투자, 신규 시장, 새로운 아이디어 및 새로운 독립성이다. 전문 분야 및 주제별 대화그룹과 일자리연대의 실무그룹은 이를 위해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이들 아이디어는 이제 그 목표에 따라 실현될 것

이다.

II. 직업훈련 합의의 전망

직업훈련에 대한 합의를 통해 노동행정, 경제계, 노동조합 및 기타 해당 지역 직업훈련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었다. 일자리연대는 전체 181개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개최되는 지역직업훈련회의를 통해 후속적인 일자리 중개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1999년 9월 30일 현재 일자리를 소개받지 못한 것으로 등록된 청소년은 29,000명을 웃돌고 있다. 이 수치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13,000명 이상 줄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1999년 11월 30일 현재 거의 17,000개에 달하는 직업훈련 실습자리가 직업훈련생을 찾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나 1998년에 비해 개선된 직업훈련 상황은 공공재정에서 지원한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 그 중에서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마련된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연대 참여자들은 사업장 내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이 공공재정의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 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특별 프로그램 연장시 이 점을 확실히 밝혔다.

일자리연대에서 추구하는 목표인 사업장 내 직업훈련 실습자리 확대는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실현되기는 하였으나 모든 지역에서 실현되지는 못했으며, 특히 동독 지역의 경우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사용자단체들은 사업장 내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렇게 할 것을 약속했다.

일자리연대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청년은 누구든지 구체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목표를 다시금 강조했다. 일자리연대는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일자리연대는 사업장들이 모든 직업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아직 숙련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것을 촉구한다. 일자리연대는 또한 청소년들도 빈자리로 남아 있는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일자리연대는 직업훈련 합의를 전체적으로 결산하고 직업훈련 회의의 경험을 공동으로 평가하며 효력이 검증된 조치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간다.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현장에서 구축되고, 이에 힘입어 직업훈련회의의 목표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 일자리연대는 신중 직업을 발굴하고 이로써 추가적인 직업훈련 실습자리가 창출되도록 한다. 신중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이미 크게 진척을 보았다. 따라서 노사는 늦어도 2월 말까지 서로 합의된 중점사항을 연방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노사가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연방정부는 법령을 발동하여 신중 직업의 도입을 준비한다.

7월에 합의된 보호 프로그램(대부(代父)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자리연대는 연방대통령이 이를 후원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이 프로그램의 활동, 목표그룹 및 조직구조에 대한 일자리연대에서 합의된 중점사항은 곧 실행에 옮겨진다.

III. 저숙련 노동자 및 장기 실업자의 고용기회 촉진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가능성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장기 실업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숙련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일자리연대는 저숙련 노동자 및 장기실업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초기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하에 시범모델을 설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자르 지방 공동체에 서 제출한 제안과 라인란트-팔츠 주정부가 제안한 ‘마인츠 모델’을 각각 하나의 동독 지역 주들과 서독 지역 주들의 선별된 노동시장 지역에서 3년의 기한을 두고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상기의 두 제안은 소위 ‘공공부조금 및 실업보조금 급여건’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면서 저숙련 노동자 및 장기 실업자의 고용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범모델이 실시되는 각 주는 이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느 데 참여해야 한다. 시범모델은 일자리연대가 현장에서 준비하고 저명한 노동시장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

IV. 고용을 촉진하는 임금정책

일자리연대는 1999년 7월 독일노총과 독일경총의 보고서를 토

대로 고용촉진 임금정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였다. 개별적인 문제의 경우 아직 어떤 합의도 도출되지 못했다. 이를 위한 회담이 1999년 12월 23일 속행될 예정이다.

V. 기업세제 개혁 현황

일자리연대는 이번에 마련된 기업세제 개혁안이 공공예산의 안정화라는 목표를 고려하면서도 독일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과세체제가 정비되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개혁안은 영업세를 소득세로 일괄 산정하도록 하여 법적으로 개인회사 형태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로써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일자리를 늘리는 투자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VI. 일자리연대 - 실무그룹

일자리연대의 목표는 2000년을 지속적인 고용 증대의 해로 만드는 것이다. 실무그룹의 구조는 이러한 과제에 맞추어 간소화하였다. 실무그룹들은 앞으로도 일자리연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실무그룹들은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조직 및 준비하는 업무를 해나간다.

2000년 1월 9일, 일자리연대 제5차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서

일자리연대 참여자들은 오늘 게르하르트 슈뢰더 연방총리를 의장으로 제5차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경제계, 노동조합 및 연방정부의 대표자들(1)은 제5차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지난번 고위급 회담에서 일자리연대의 향후 중점사항, 직업훈련 합의의 전망 및 저숙련 노동자와 장기 실업자의 고용기회 촉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이후 고용을 촉진하는 임금정책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합의가 도출되었다.

긍정적인 경기 전망, 이미 실행되었고 앞으로도 실행될 계획인 세계 및 사회보험 분야의 부담 경감, 안정적인 물가 상승 등은 독일에서 실업률을 계속해서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도록 임금 정책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주고 있다. 일자리연대는 생산성, 임금, 수익 및 물가안정에 대한 전체 경제의 기본 데이터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일자리연대는 — 1999년 7월 6일자 독일경총과 독일노총의 공동 성명서를 토대로 — 다가오는 2000년 단체교섭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일자리에 중점을 둔 임금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생산성 증대에 따른 분배의 여지는 우선적으로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여 활용할 것을 권한다. 각 임금협약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책임하에 해당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을 세분화하여 합의하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을 촉진하는 장기 근속자의 조기퇴직이 해당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 추가적인 사회보험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당사자(노사)는 해당 사업장 및 산업 분야에 따라 세분화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즉 조기퇴직이나 고령노동자들의 시간제 노동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일자리연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업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일자리연대는 퇴직자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어 재고용 비율이 높아지도록 힘쓰며 이 때 중소기업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단체교섭에서 결정하여 해결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한시적으로 법적 전제조건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 연방정부는 그 밖에도 고령노동자 시간제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 개정안은 고용촉진을 위해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정책과 관련하여 현대적인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단체협약 당사자들은 향후 2년 내에 임금협약 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계좌⁹⁾에 대

9) 노동시간계좌(Arbeitszeitkonten)는 특히 건설업, 인쇄업 등과 같이 계절에 따른 노동시간 변동이 심한 직종에서 일종의 계를 설치하여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변형근로제의 일종이다.

한 토론을 거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자리연대는 시간제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간정책’ 실무그룹은 제안서를 작성한다.

일자리연대는 이러한 합의를 실행하는 것이 보다 많은 일자리와 독일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2000년 7월 10일, 일자리연대 제6차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서

일자리연대는 7월 10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연방총리를 의장으로 제6차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경제단체, 노동조합 및 연방정부의 대표자들은 제6차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I. 경제 상황

독일 경제는 눈에 띄는 도약을 했다. 수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내수 경기에도 박차가 가해졌다. 이러한 변화가 노동 시장에도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용이 증대되고 실업이 줄어들었다. 일자리연대는 이렇게 활성화된 경기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우선적으로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조세 경감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성장 전망은 그 어느때보다도 밝다. 국가의 신규 채무 감소,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 지속적인 저금리정책 유지, 물

가상승률 완화, 낮은 인플레이션 및 고용을 촉진하는 임금정책 등이 경제상황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기여하였다.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조건과 맞물린 경기 호조는 필수적인 구조개혁 계획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분명하게 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며, 이로써 실업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정치 주체—연방정부와 야당—와 경제단체와 노동계는 개혁의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해야 한다. 일자리연대는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II. 직업훈련 합의의 전망

일자리연대는 1999년 7월 6일자 직업훈련 합의에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원하는 직종에서 최대한 주거지에서 가까운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제공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속은 후속 연도에도 유효하다. 1999년에는 이 목표에 크게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직업훈련 실습자리의 공급과 수요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공공재정을 지원하여 연방정부가 실시한 특별 프로그램의 덕분이었다.

일자리연대는 이원화된 교육과정(듀얼 시스템)에서의 사업장 직업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재정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은 줄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연방정부의 특별 프로그램을 2000년에는 직업훈련 실습자리 문제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실천해 나간다. 이와 동시에 올해에는 사업장 내 직업훈련 실습자리 공급을 크게 확대하였다. 경제단체들은 연방정부와 노조의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늘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독일 경제는 2000년과 후속 연도에 최소한 인구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장 내 직업훈련 실습자리의 추가 수요를 충당하게 될 것이다. 경제는 IT와 미디어 분야에서 사업장 내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40,000개로 늘린다는 약속을 이미 2000년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3년까지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20,000개 추가로 늘려 총 60,000개를 제공하게 된다. IT분야에서 보다 많은 직업훈련 및 향상훈련으로 전문인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약을 펼치면서 얻은 긍정적인 경험을 전문인력난이 우려되는 기타 다른 분야에도 적용한다.

일자리연대는 단체협약 당사자들(노사)에게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직업훈련 실습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실습자리 수요를 고려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며, 직업훈련을 이수한 청소년들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청소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연방정부는 2000년도 연방행정부에서 직업훈련 실습자리 제공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일자리연대는 각 주 및 지자체들도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확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호소한다.

지역직업훈련회의의 실효성은 근본적으로 입증되었다. 연방노동청, 경제단체들 및 노조는 보다 많은 사업장들이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활동을 더욱 개선하고

강화해 나간다. 성공적으로 실시된 조치는 문서화하여 널리 보급함으로써 이러한 조치가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해당되는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구동독 지역의 새로운 주들에서는 추가적으로 '동부 직업훈련 실습자리 개발' 프로젝트로 지원한다. '보다 많은 사업장 직업훈련 기회를 위한 지역적 협력'이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그 밖에도 2000년 6월 9일의 '연방-주-프로그램'을 통해 동독 지역 새로운 주들에 17,000개의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추가적으로 마련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가을까지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다시금 일자리연대가 지역적 후속 중개 활동을 준비하여 2000년 12월 말까지 직업훈련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일자리연대는 성공적으로 실시된 직업훈련 직종을 현대화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간다. 올해 13개의 새로운 직업훈련 직업으로 도입되었으며, 30개 이상의 직업이 이미 신규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들 직업은 최대한 2001년에는 정식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신종 직업에 관한 제안서를 토대로 노사와 관할 연방부처는 노동시장에 적용 가능하고 탄력적인 신종 직업훈련 직업 발굴을 위해 두 개의 모델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직업준비, 사업장 외부에서의 직업훈련 및 후속 향상교육은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장에 최대한 가깝게 조직되어야 한다. 경제단체들과 노조는 사업장에서 충분한 실습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사업장 실습 비중이 높은 직업준

비 과정이 보다 폭 넓게 실시되도록 한다. 외국인 청소년 및 젊은 이주민들의 전문직업교육 참여를 높인다. 따라서 일자리연대는 ‘젊은 이주민의 교육기회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불이익을 받는 청소년 지원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실습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법전 제 3권에 명시된 직업훈련 지원은 계속해서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 때 일자리연대는 특히 사업장에서(현장과 사무직 모두 포함)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 불이익을 받는 청소년들이 사업장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보와 컨설팅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네트워크에서 이를 위한 지원구조를 구축하도록 힘쓴다.

III. 청소년과 고용 문제 - 지역적 이동성 촉진

연방정부는 특별 프로그램의 기간을 2000년 이후로 연장한다. 일자리연대는 특별 프로그램의 연장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일자리연대는 인구변동으로 인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연방통계청은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 수는 동독 지역의 새로운 주들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연대는 동독 지역의 새로운 주들의 어려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2001년도 특별 프

로그래를 통해 동독 지역의 새로운 주들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따라서 일자리연대는 2001년에 자금의 50%를 동독 지역의 새로운 주들에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일자리연대는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동독 지역의 새로운 주들의 청년 실업자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도록 동독 지역의 새로운 주들에서 충분한 일자리와 실습자리의 창출이 시급하다. 일자리연대는 이 목표를 위해 사회법전 제3권에 명시된 경제정책, 구조정책 및 관련 수단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서독 지역 주들의 경우에도 청년실업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에서는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동독 지역의 새로운 주들의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들 동독 지역의 새로운 주의 실업 청소년들에게 다른 연방주의 비어 있는 일자리를 중개해 주는 것이 실업 극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연대는 특별 프로그램에서 다른 연방주의 일자리에 채용될 때의 이동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이러한 지원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일자리연대는 다른 연방주의 일자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청년 실업자들을 돕기 위해 사회법전 제3권 제10조에 의거하여 ‘이동성 지원 예산’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동독 지역의 새로운 주 및 청년 실업률이 과도한 서독 지역의 주들의 노동청들은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자금의 5%를 이동성 지원 용도로 받도록 한다. 구체적인 이동성 지원 대책은 해당 노동청에서 마련한다. 연방노동청은 구직으로 인한 이동성 지원이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동독 지역의 새로운 주들의 노동청들과 구연방주의 노동청들이 중개 파트너십을 맺을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동독 지역의 새로운 주들의 실업 청소년들이 구연방주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도록 한다.

IV. 노동시간정책 및 보다 장기적인 노동시간계좌 활용

일자리연대는 1999년 7월 6일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다시금 강조한다. 일자리연대는 탄력적이고 세분화된 노동시간 실시와 고용을 촉진하는 초과근로시간(잔업, 특근) 감소를 지지한다. 노동시간의 경우 노동시간 통로, 연간 노동시간, 연간 노동시간계좌, 장기 노동시간계좌 및 평생 노동시간계좌의 도입, 노동과 사업장 직업향상교육 간의 원활한 연계 등과 같은 단체협약의 합의사항을 골자로 하여 구성된다.

일자리연대는 장기적인 노동시간 저축을 통해 각자의 생활여건에 따라 직업향상교육이나 노후보장 및 고령노동자 단시간 노동제를 토대로 한 조기퇴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장기적인 노동시간 저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저축된 노동시간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자리연대는 그 밖에도 지금까지 적용된 노동시간정책 수단 및 향후 계획된 수단을 이용하여 파산시에 저축된 노동시간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한다. 시간-유가증

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파산시의 위험 방지 및 노동자들의 안정화 욕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장기적인 노동시간계좌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간-유가증권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담을 피하면서 노동시간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시간-유가증권은 또한 일자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저축된 노동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준다. 뿐만 아니라 저축된 노동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해결책도 제시한다.

V. 숙련 향상

일자리연대는 정보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계, 노동계 모두의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향상훈련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숙련향상 정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입지로서 독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경우 향상교육과 평생교육은 숙련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향상교육은 평생 동안 숙련을 확보해 주고 직업생활의 질을 높여준다. 또한 향상교육은 실업을 극복하고 노동시장에서 남녀차별 없는 구직의 기회를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나이에 관계 없이 전문직종에서 정당한 구직의 기회를 갖도록 해준다. 여성 및 숙련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장 내의 향상교육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

해야 한다. 업무별 숙련 향상은 사업장의 과제이다. 노사는 연방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향상교육촉진법(‘마이스터-BaföG’) 개정안을 환영한다.

노동자들은 오늘날 그 어느때보다도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려는 의욕이 강하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와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분야의 혁명적인 발전은 노동자들이 근무기간과 휴가기간 중에 스스로 향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자세는 더욱 장려되어야 한다. 일자리연대는 향상교육 프로그램의 품질보증제가 개발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는 향상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문제와 인증서의 적용 가능성 문제도 포함된다. 일자리연대의 ‘직업훈련 및 향상교육’ 실무그룹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연구한다.

단체협약 당사자들은 평생교육의 의미에서 향상교육을 위한 제반 여건에 합의하도록 한다. 단체협약 당사자들은 장기 노동시간계좌 및 기타 노동시간 관련 조치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향상된 교육을 위해 저축된 시간을 사용할 경우 노동시간도 향상교육에 할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VI. 직무순환(Job rotation)

일자리연대는 ‘직무순환(Job rotation)’의 수단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직무순환은 향상교육을 통해 종업원들의 숙련수준을 높이고 이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 장점

이 크다. 종업원들은 자신의 기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직무 영역에 탄력적으로 투입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숙련 습득으로 고용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이전에 실업자였던 사람이 임시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숙련을 향상하고 현장 실습의 경험을 쌓을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구직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즉 투입된 사업장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장의 동일 업무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직무순환은 실업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다. 일자리연대는 이제 직무순환이 연방노동청의 정식 조치의 하나로 자리잡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일자리연대는 고용된 종업원들의 향상교육 비용을 사업장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즉 급여와 향상교육 비용을 모두 사업장에서 부담한다. 동시에 일자리연대는 직무순환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에 임시 투입되는 경우 앞으로는 사회법전 제3권에 명시된 자체적인 새로운 수단을 통해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일자리연대는 이를 통해 직무순환이 확산되고 실업자들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

직무순환 차원에서 임시 투입된 사람의 향상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향상교육이 최대한 사업장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해당 법적 전제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사회법전 제3권에 의거한 향상교육 지원 규정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연방노동청은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조직적인 전제조건을 확보한다.

VII. 저숙련 노동자 및 장기 실업자의 고용기회 촉진

일자리연대는 2000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연방노동청의 고용촉진 가이드라인과 사회법령을 통해 1999년 12월 12일자 의결 사항을 실행할 것을 환영한다. 이로써 두 가지 모델 프로젝트가 조만간 각각 하나의 동독 지역 주와 서독 지역 주에서 시작될 수 있다. 라인란트-팔츠 연방주정부에서 제안한 ‘마인츠 모델’은 라인란트-팔츠 지역의 경우 노동청 관할구역 몬타바우어, 코블렌츠, 노이비드, 마이엔에서 실시되며, 브란덴부르크 지역의 경우 노동청 관할구역 에버스발덴과 노이루핀에서 실시된다. 자르 지역 공동체가 제안한 모델은 자르란트와 작센 지역의 노동청 관할구역 켐니츠에서 시도된다.

VIII. 차기 고위급 회담

일자리연대의 차기 고위급 회담은 2000년 가을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차기 회담의 보다 정확한 일정은 일자리연대의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다.

2002년 1월 25일, 일자리연대 고위급 회담
관련 슈뢰더 연방총리의 기자회견 내용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였으며 어떤 현안도 — 무성했던 추측과는 반대로 — 빼놓지 않았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STS HEYE: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자회견에 참가해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방총리께서 회담의 결과를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BK 슈뢰더: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였으며 어떤 현안도 — 무성했던 추측과는 반대로 — 빼놓지 않았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경제 상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실업이 세계경제 침체로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써 2001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실업이 다시 4백만을 넘어서게 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실업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 이미 수용된 것이지만 —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2003년까지를 기한으

로 연간 40억 마르크 이상이 투입되는 투자 프로그램을 결정했으며, 이를 계속 추진해 나가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까지 교통, 교육 및 학술 분야에 매년 25억 유로가 추가적으로 투자됩니다.

그 밖에도 노조와 사용자단체들이 연방정부의 재정 공고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혀 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지지는 우리가 발표한 대로 투자를 지속해 나간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하여 매우 집중적인 토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자리연대는 “Job-AKTIV 법”이라 불리는 법을 준비하는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이것은 노동시장에 받을 들어놓자마자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일자리연대는 협의를 거쳐 일자리 중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노동청에 3,000명의 중개 담당자가 새로 충원됩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실업자가 된 사람들에게 최대한 즉각적으로 비어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일자리 수요공급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으며, 노조와 사용자 모두가 기업들이 과거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비어 있는 일자리가 신속하게 실업자들에게 중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어 있는 일자리의 수에 대해서는 상이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연방노동청의 자료에 따르면 4십만 개, 경영자총연합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1백 2십만 개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어떤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 가리기 위해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비어 있는 일자리들 중 등록되지 않은 일자리가

많이 있으며 이 때문에 일자리 중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Job-AQTIV법”입니다.

따라서 일자리연대는 이 법을 마련하였고, 이로써 “요구와 함께 지원”이라는 기본원칙을 사회적으로도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이 경우 ‘요구’는 제공한 일자리를 수용하지 않거나 구직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지원받는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대감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의 연대감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자는 누구나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장기 실업자들을 일자리로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인츠 모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수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이 장기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라는 점을 밝혔고, 따라서 이 조치를 시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훈련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일자리연대가 이룬 대대적인 성공 중의 하나가 직업훈련 실습자리의 공급을 수요에 맞춘 것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상황은 다르고, 동독 지역의 경우 서독 지역과 달리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동독 지역의 경우 국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실시한 JUMP프로그램이 동독 지역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

다.

우리는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일자리연대의 모든 당사자들은 연방내무장관이 이주민 통제 문제에 대하여 제출한 법이 이주민법의 인도주의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노조측과 사용자측의 변화에 대한 욕구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자리연대 회담에서는 당연히 다가올 단체교섭에 대한 이야기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노사가 일치된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일자리연대는 단체교섭을 위해 마련된 기구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도에 우리가 승인한 성명서는 독일노총과 독일경총에서 합리적인 단체협약의 기본 토대로 마련한 것이며, 이 성명서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며 전체 경제의 적절한 임금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자율 단체교섭¹⁰⁾을 존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강력한 주장이 나올 것을 기대한 사람이 있다면, 이는 단체협약과 교섭 당사자들에게 그리 좋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전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이것이 노동자들의 욕구뿐만 아니라 독일의 전체 경제상황에도 적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10) 자율임금협약(Tarifautonomie)은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독일노조의 고유 권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지 어떤 강력한 공식 성명서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비록 —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 모든 전제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였지만, 어느 쪽에서도 일자리연대에서 대리 단체교섭을 치르려는 시도나 요구가 없었던 점은 매우 이성적인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밖에도 일자리연대 차원에서 회담을 이끌어 온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고, 어느 측에서도 일자리연대의 존재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올해 한 차례 더 회합을 가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연방의회 총선이 있기 전에 단체교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계의 광범위한 개혁에 대한 전망을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한 회합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차기 회담을 부담스러운 준비 없이 하나의 집중토론을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이며, 저 또한 그러한 취지로 회의를 주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우측과 좌측에 계신 분들을 위협하는 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전에 보내는 초대말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담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질문: 총리님, 오늘 회담의 생산적인 전체 결과를 한 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일자리연대가 지금까지 모두 잘해 왔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오늘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무엇이고, 어떤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BK 슈뢰더: 우선 오늘 회담은 경제발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다가오는 단체교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서로 상이한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점에서 첫 번째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처럼 의견을 교환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으며, 이것이 향후 정책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에서 결코 과거의 일에 대해서만 의견을 나눈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도 밝혔지만 우리는 노동청의 일자리 중개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회담 당사자 중 한 측은 비어있는 일자리가 신속하게 노동청에 등록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물론 “Job AQTIV법”으로도 그렇게 했지만—구직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자리가 중개되도록 해서 구직자들이 비어 있는 일자리에 취업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구직자와 비어 있는 일자리 사이의 불균형을 불식하는 것이 고용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일자리연대가 이주민 통제 문제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의 두 가지 문제는 숙련향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이 충분한 자격능력을 갖추었고 노동시장에 제공된 일자리를 받아들인다면 이주노동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세 가지 점에서 오늘 회합이 성과가 있었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임금정책에 관한 공개토론회의 격양된 상황에서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때로는 무성한 추측들이 난무하여 사전에 이미 어떤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곳에서 단체교섭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들을 토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일자리연대이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 측에서 주려고 한 것보다 다른 측에서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체교섭이란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할 때처럼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 총리님, 쟁점 중의 하나가 초과근로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초과근로시간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부문에 초과근로시간을 줄이는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초과근로시간을 해소하도록 하는 주체는 어디이고 어떻게 이를 해소해 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법적으로 초과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것이지요?

BK 슈뢰더: 저는 이것이 협약당사자들의 과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서 “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라고 말한 술테 의장님의 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산업 부문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법적으로 이를 규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의의 정책이며 단체협약 당사자들의 안전으로 보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2001년 3월 4일, 일자리연대 제7차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서

일자리연대는 오늘 게르하르트 슈뢰더 연방총리를 의장으로 제7차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경제단체, 노동계 및 연방정부의 대표자들, 즉 게르하르트 슈뢰더 연방총리, 발터 리에스터 장관, 베르너 뮐러 장관, 에텔가르트 불만 장관, 올라 슈미트 장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차관, 헤리베르트 치첼스베르거 차관, 미하엘 로고프스키 독일전경련 회장, 디터 훈트 독일경영자총연합회, 디터 필립 독일수공업자중앙회 회장, 로드비히 게오르그 브라운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디터 술데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의장, 클라우스 츠빅켈 금속 산별노조(IG Metall) 제1의장, 프랑크 브지르스케 공공직·운수·교통노조 의장, 후베르투스 슈몰트 광업·화학·에너지 산별노조(IG BCE) 의장, 롤란트 잇센 독일사무직노조 의장은 제7차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I. 경제 상황

독일 경제는 지속적인 도약을 하고 있다. 3.0 %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지난해 독일은 지난 10년 이래 최고의 실질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올해에도 성장의 템포는 이보다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출 외에도 내수가 점진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처럼 긍정적인 변화는 노동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거의 1백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2000년에만 경제활동인구 수는 590,000명 이상이 늘어났다. 이것은 긍정적인 경기 변화, 수출 증대, 세계 개혁으로 개인 가계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및 고용을 촉진하는 임금정책 등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등록된 실업자 수는 여전히 연평균 380만명을 웃도는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실업률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서독 지역의 실업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데 비해 동독 지역의 실업자는 20,000~40,000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업훈련 실습자리 상황도 2000년에 크게 개선되었다. 1995년 이래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비어 있는 실습자리의 수가 실습자리를 구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수를 넘어섰다. 이처럼 좋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사업장 내 직업훈련 실습자리가 현저하게 늘어난 덕분이다. 전년도에 비해 사업장은 약 14,500개(이는 대략 3%에 달하는 수준임)의 직업훈련생 계약을 늘렸다.

민간투자 및 공공투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투자는 자립적인 경제발전을 신속하게 이룩하고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 높은 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특히 동독 지역의 새로운 주들에서 시급하다.

따라서 UMTS¹¹⁾ 이자 저축액에서 재정을 충당할 계획인 미래 투자 프로그램은 주요 성장 부문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전제조건이다. 연방정부의 기후보호 프로그램으로 확정된 친환경 건물개조 지원은 주제별 대화그룹인 ‘노동과 환경’의 연구결과 및 보고 내용을 활용하게 되며, 투자와 고용을 위한 중요한 동인이 될 것이다.

일자리연대는 이처럼 유리한 제반 여건을 계기로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과 장기적인 고용 증대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긍정적인 경제 발전에 힘입어 대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일자리연대는 사업장들이 채용계획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몇몇 부문에서 현재 관찰되는 정기적인 초과근로시간(잔업, 특근)을 줄이고 이것이 추가적인 고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일자리연대는 노동자와 사용자측 모두에게 고용촉진을 위한 모든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촉구한다.

□ 신규 채용

11)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의 약어로 유럽 차세대 이동통신의 명칭. UMTS 이자 저축은 UMTS 라이선스 판매 수익을 저축하여 발생한 이자 수익을 말하며, 연방정부는 이 이자수익금으로 투자와 채무상환을 계획했다.

- 탄력적인 노동시간정책, 특히 노동시간 통로, 연간 노동시간 및 연간 노동시간계좌, 장기 노동시간계좌, 평생 노동시간계좌 등의 단체협약 합의
- 생산적인 노동시간정책
- 시간제 노동 강화
- 비정규직 활용

지원자가 없어 빈 채로 남아 있는 일자리들이 여전히 많고, 이러한 일자리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연대는 숙련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고령노동자 고용 문제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도입하였다. 일자리연대는 채용 및 전문능력 교육정책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안과 조치를 약속했다.

II. 숙련향상

지식정보사회로의 발전과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거의 모든 일자리에서 직업요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동 추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수가 줄어들고 고령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연대는 숙련향상을 위한 잠재력을 광범위하게 개발 및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일자리연대는 지역직업훈련회의에 협력하면서 직업훈련 실습

자리를 양적으로 증대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개선시키겠다는 목표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경제단체들과 노조는 그 밖에도 가능한 한 많은 단체교섭에서 직업훈련 기회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사합의를 해서 직업훈련 실습자리 제공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매년 9월 30일까지 노동청에 등록된 청소년들 중 아직까지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각 지역 여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직종의 최대한 주거지에서 가까운 직업훈련 실습자리를 제공받도록 한다. 단체협약 당사자들은 나아가 사업장 내에서 또는 사업장 외부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청소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활용해야 한다.

일자리연대는 ‘IT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략’을 실행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현재 IT전문능력 향상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보완 적용하고 있다. 일자리연대는 숙련인력난이 예상되는 다른 분야들을 신속하게 찾아내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직업훈련 실습자리 창출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일자리연대는 적절하게 구성된 직업훈련 및 향상훈련을 통해 자립심을 함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여기에 향상교육촉진법(‘마이스터-BaföG’) 개정안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노사는 사업장 내 향상교육을 위해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 단체협약 당사자들은 평생교육의 의미에서 향상교육을 위한 제반 여건에 합의한다. 숙련향상을 위한 시간 투자는 노동시간정책의 새로운 과제이다. 단체협약 당사자들은 장기 노동시간계좌를 활용하고 기타 노동시간 관련 조치를 활용

하여 저축된 노동시간을 향상교육에 투입할 경우 동시에 노동시간도 향상교육에 할애될 수 있도록 힘쓴다. 일자리연대는 차기 단체교섭 종료 후 진척 상황을 결산한다.

- 사업장 내 향상교육(저학력층, 고령노동자 및 여성 노동자를 특별히 고려한다) 참여를 크게 높인다.
- 초기 직업훈련 및 직업경력을 토대로 생산 및 서비스 분야에서 정보사회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숙련을 광범위하게 향상한다(핵심 숙련향상, 전체 종업원에 대한 IT 기본능력 배양).
- 노동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습기회 활용(학습을 촉진하는 형태의 업무 조직; 업무에 수반되는 학습을 위한 미디어/IT 지원).

제대로 향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품질요건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자리연대는 품질보증제를 도입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개별적인 몇몇 분야에만 구속력 있는 세분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품질보증 절차는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쉽고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획득한 자격 및 능력의 인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일자리연대 당사자들간의 긴밀한 협력은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품질보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동 — ‘학습하는 지역 — 네트워크 촉진’ 프로그램이 그 핵심이다 — 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숙련향상은 비단 사업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공된 교육기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연대는 기존의 교육기회에

대한 정보와 자문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글로벌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국제적인 경험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격요건에 속한다. 따라서 일자리연대는 직업훈련생 및 전문가들의 해외 교환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한다.

일자리연대는 각 주들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특히 직업적인 숙련을 갖춘 청년들과 직업훈련 및 향상교육을 마친 사람들에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문제를 토론해 나간다.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는 일자리연대의 업무 및 활동에 있어서 모두 해당되는 전반적인 목표이다. 여성 문제는 남녀고용평등의 목표하에 숙련향상을 위한 모든 조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남녀고용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연방정부와 일자리연대의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벤치마킹 그룹에 독일에서 사업장 내 향상교육 부문의 우수 사례를 선별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위탁한다. 벤치마킹 그룹은 이 보고서를 2001년 초여름까지 제출해야 한다.

III. 고령노동자들의 고용 전망 향상

일자리연대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기회 향상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별첨 2 참조). 이와 관련하여 일자리연대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고령노동자들의 고용상황을 평가할 때 일자리연대 당사자들은

고용 부문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조기퇴직 대신 앞으로는 고령 노동자의 고용촉진, 실업발생 사전 예방 및 기존 실업자의 직장복귀를 노동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정한다. 또한 노동조건 변화, 작업조직 변화 및 사회법적 제반 여건의 변화를 통해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비단 고용상황 개선과 인구 구조 변동 때문만이 아니라 나이든 노동자들의 조기퇴직이 사회 전체적으로 높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유럽 내에서 비교해 볼 때 독일의 고령 노동자들의 경제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이미 수년 전부터 비판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일자리연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한다.

- 사업장과 노동자들에게 평생교육의 필요성 의식화
- 고령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사업장 내 향상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숙련향상. 이와 관련하여 일자리연대는 고용조건 향상교육이 사업주와 종업원 스스로의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서가 이를 지원해 줄 것이며, 이는 또한 작업조직 및 노동시간 운영의 묘를 살려 이루어지도록 한다.
- 연방노동청이 중소기업에 고용된 50세 이상의 나이든 노동자들의 향상교육 비용을 일시적으로 재정 지원한다.
- 재취업 보조금의 경우 한시적 범규정으로 수령 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낮춘다.

IV. 일자리 중개 강화

일자리연대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는 사실을 고무적이라 평가한다. 장기 실업자, 저숙련 실업자 및 장년층 실업자를 비롯하여 몇몇 지역과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분적인 숙련인력 부족현상 등과 같은 서독 지역의 구조적인 실업 문제 역시 전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동독의 높은 실업만큼 노동시장의 중요한 과제이다. 일자리연대는 동독 지역에서 일자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를 늘리는 한편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한 모든 재정적 및 경제정책적 수단을 투입하고 인프라를 더욱 증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용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구조적인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예방 차원의 노동시장정책이 필수적이다. 일자리연대는 이미 직무순환을 통해 실업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고 고령 노동자의 숙련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더 나아가 일자리연대는 실업자들의 일자리 중개수단을 다음과 같은 목표하에 계속 개발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 장기실업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중개 현대화
- 정규 노동시장에 조기에 편입시키기 위한 지원책의 투명성 강화 및 새로운 방향 설정
-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기회 개선

경제계와 노조는 상기의 조치들이 이번 회기 안에 실행되고 이러한 개혁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2001년 6월까지 법안이 제출되기를 희망한다. 일자리연대는 노동시장정책 수단의 개혁을 통해 유럽연합 고용정책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일자리연대는 연방노동청의 자체 행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V. 노후대책 및 재산형성

일자리연대는 민간 노후보험의 새로운 법적 가능성이 사업장 내 노후보험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동시에 재산 형성의 기회가 확대된다. 일자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2000년 단체교섭에서 임금 구성요인의 변화와 노후보험 급여를 자발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임금협약 규정이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 일자리연대는 단체협약 당사자들이 차기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지원책을 고려하여 노후보험과 재산형성을 위한 단체협약상의 가능성 및 사업장 내의 가능성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VI. 혁신을 통한 일자리

ONE Economy에서 ‘혁신을 통한 일자리’ 주제는 일자리연대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혁신을 통한 일자리’라는 슬로건하에 새로운 실무그룹이 투입된다. 이 실무그룹은 2000년 12월로 종료되는 전문분야 대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분야의 고용 잠재성’의 업무를 계승하며 일자리연대의 기타 다른 전문분야 대화의 업무에 연결된다.

일자리연대의 핵심 테마는 ‘모두를 위한 정보사회’이다. 즉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이다. 새 실무그룹의 과제는 혁신적인 노동관계 및 혁신적인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의 정보제공 부문에서 최우수관행(Best Practice Project)을 발굴하여 발표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보사회 질서의 틀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지식사회에서 중업원들의 안전보장 개념(예: 정보보호)을 개발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모든 경제 부문에서 현대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핵심 주제의 하나이며, 이를 통해 특히 산업 부문간 교차지점에서 신규 일자리창출을 기대한다. 새 실무그룹의 두 번째 중점 분야는 ONE Economy — 특히 생산 중심의 서비스 분야 — 에서 혁신적인 신규 일자리 발굴 및 확대이다. 실무그룹은 개방된 대화를 통해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관심 있는 대중과 접촉한다.

차기 고위급 회담까지 첫 번째 중간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VII. 유럽연합의 동유럽 확대

유럽연합의 동유럽 확대는 유럽의 분단을 극복하는 역사적인 시도이다. 일자리연대는 유럽연합의 기준을 수용함으로써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가입 후보국들의 노력을 고무한다. 일자리연대는 현재의 유럽연합 회원국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에게 있어서 유럽연합의 동유럽 확대는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연대는 노동력의 추가적인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따라서 일자리연대는 노동자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류를 탄력적이고 세분화된 경과기간을 합의하여 적응과정의 사회적 부작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노력을 지지한다. 경과기간은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이 향상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구직 기회를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일자리연대는 유럽연합의 동구 확대를 지지한다. ‘유럽연합 동구 확대’에 논의하는 일자리연대의 전문가그룹은 제반 여건과 경과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일자리연대는 회합을 통해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

VIII. 차기 고위급 회담

일자리연대의 차기 고위급 회담은 2001년 하반기에 개최된다. 차기 회담의 보다 자세한 일정은 일자리연대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